研究報告 7
1979. 12.

漁業權의
損失補償制度改善方案

朱 尤 一 (責任研究員)
辛 英 泰 (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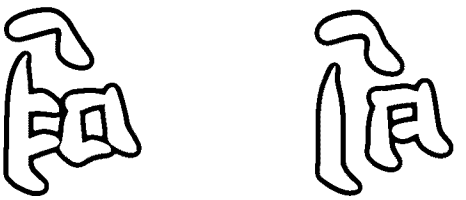

머 리 말

本 報告書는 農水産部의 委嘱研究事業의 一環으로서 1979년 1월부터 同年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研究結果이다.

漁業権은 漁具·漁法의 性格上 一定海域을 排他独占的으로 이용케 할 必要가 있거나, 비교적 資本制化된 漁業으로부터 沿岸零細漁民들의 生存을 保障하기 위한 社会政策的인 必要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漁業権에 損失을 가져오는 行為(또는 処分)는 従事漁民들의 生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反対給付로서의 補償이 따른다.

이에 관한 補償은 水産業法, 公有水面埋立法 및 各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 이들 規定에 많은 問題点,未備点이 있어 補償을 둘러싼 利害関係者 双方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 研究는 漁業権損失補償制度의 改善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漁業権과 그 損失의 概念確立 및 補償金額決定을 위한 諸方法을 検討하였고, 現行 補償制度가 가지고 있는 問題点 내지 未備点을 分析하였으며, 나아가서 現行 補償制度의 改善을 위한 方案을 提示하였다.

끝으로 本 研究를 遂行해 주신 本院 朱尤一 責任研究員을 비롯한 水産開発研究室 職員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리며, 本 研究内容에 대한 責任은 어디까지나 担当 研究者들의 責任임을 밝혀둔다.

1979年 12月

韓国農村経済研究院長 金 甫 炫

目　　次

要約 및 建議事項

Ⅰ. 序　論 …… 9

1. 問題의 提起 …… 9

2. 研究의 範囲 및 方法 …… 10

Ⅱ. 漁業権의 概念 …… 11

1. 漁業権의 意義 …… 11

가. 漁業権의 発生 …… 11

나. 漁業権 漁業의 対象水面 …… 12

2. 漁業権의 性格 …… 18

가. 私権으로서의 漁業権 …… 18

나. 財産権으로서의 漁業権 …… 19

다. 物権으로서의 漁業権 …… 19

라. 漁業権에 대한 制約 …… 20

3. 漁業権의 種類 및 現況 …… 21

가. 漁業権의 種類 …… 21

나. 漁業権의 現況 …… 36

Ⅲ. 漁業権의 損失과 그 補償 …… 42

1. 漁業権損失의 意義와 原因 …… 42

가. 漁業権損失의 意義 …… 42

나. 漁業権損失의 原因 …… 43

2. 漁業権損失의 性格 …… 47

가. 漁業権損失의 前提 …… 47

나. 漁業権損失의 内容 …… 47

다.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處分의 效力……48
3. 漁業權損失에 대한 補償……49
가. 損失補償의 槪念……49
나. 損失補償의 諸原則……50
다. 漁業權의 損失과 그 補償의 妥当性問題……52
Ⅳ. 損失(評価)額의 算定……54
1. 損失額算定의 基礎……54
2. 損失額算定의 諸方法……55
가. 原価法……55
나. 比較法……62
다. 還元法……62
Ⅴ.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와 그 問題点 및 改善方案……66
1.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66
가. 公益上必要나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한 漁業權損失의 補償……66
나. 埋立 등의 工事에 의한 漁業權損失의 補償……69
2.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의 問題点 및 改善方案……70
가. 몇가지 事例……70
나. 補償金算定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素의 統一性問題……74
다. 補償制度에 관련된 기타의 問題点……81
附 錄……85

要約 및 建議事項

要　　約

漁業権損失이란 漁業権漁業에 있어 어떤 原因으로 그 漁業権이 取消되거나 漁業権의 行使에 制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을 둘러싸고 利害関係者 双方에 분쟁이 惹起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現行 補償制度가 가지고 있는 여러 問題点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이러한 問題点을 해결하여 원만한 合意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制度의 改善이 必要하게 된다.

1. 漁業権損失의 原因은

1) 公益上 必要에 의한 경우

2) 漁業者가 스스로 그의 漁業権抛棄에 同意한 경우

3) 기타의 原因으로서

① 免許를 받은 者 이외의 者가 漁業을 支配할 때

② 事前申告 없이 1年이상 休業하거나 漁場을 遊休状態로 放置할때

③ 錯誤로 인한 免許를 받았을 때

④ 漁業者가 関係法令에 違反했을 때

⑤ 相続時 몇가지 事由에 해당될 때

⑥ 漁業免許期間이 満了되거나 免許期間延長을 不許할 때 등이다.

2. 위의 諸原因中 現行 制度上 1), 2)의 경우에 대해서만 補償이 行해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3)의 ③과 ⑤,⑥의 事由中 公益上 必要에 의한 경우는 최소한 施設物에 대한 補償은 있어야 할 것이다.

3. 現行 制度上 漁業権損失額算定은 還元法에 의하고 있으나, 몇가지의 問題만 해결되면 原価法, 比較法에 의한 算定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4. 現行 補償制度는 비교적 상세하기는 하나 아직 많은 問題点을 내포하고 있다. 즉

1) 補償金算定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要素의 問題로서

① 漁獲量과 漁獲物価格을 어떻게 客観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証憑資料의 客観性認定의 우선순위를 法規定으로 確定시킬 必要가 있다.

② 漁業経費는 水産業法施行令에서 定하고 있는 것에 限定되는가, 아니면 그 이외의 것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問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概念을 確実하게 할 必要가 있다.

③ 補償水準問題도 있다. 즉 公益上 必要에 의해 漁業権을 取消하는 경우 現行 制度上 算出한 損失額의 80%만 인정해 주는데, 完全補償의 原則에 입각하여 算出額의 全額을 補償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補償制度施行과 관련된 기타의 問題点으로

① 補償金의 交付期間이 너무 길다.

現行 補償制度에 의하면 補償金 交付期間은 補償金 決定後 최고 2年인데, 이는 대폭 단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② 協議成立前 埋立工事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違法行為에 대해 구체적인 制裁規定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問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엄중한 制裁規定을 두어 漁民들의 生存権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漁業権損失処分의 効力発生時期에 関한 問題

漁業権의 損失을 가져오는 処分을 한 후에 一定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損失漁民들은 많은 困難을 겪는다. 따라서 転業을 위한 準備期間으로서의 一定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漁業権取得後 施設物設置를 하지 않은 경우의 補償問題

現行 補償制度에 의하면 이 경우의 補償金額은 漁業権의 取得価額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漁業者 자신의 사정으로 施設物設置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限해 適用할 수 있으며 加害者側(主로 行政官庁)으로부터의 종용에 의해 施設物을 設置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適用하는 것은 不合理하다. 따라서 이때는 종용으로 인해 施設物設置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追加補償이 있어야 할 것이다.

結 論 的 項

1. 漁業権損失補償에 関한 特例法의 制定이 必要하다.

주로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에 근거하고 있는 現行 漁業権損失補償制度의 諸事項은 그 内容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損失漁民들이 主張하는 損失額과 그 内訳 및 算出方法을 提示함에 있어, 그에 関한 証憑書類를 첨부해야 할 때 그 客観性認定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으며 損失額算出過程에서나 그 施行上에 있어서도 많은 問題가 있다.

앞으로 埋立工事 등이 拡大되어 나갈것이고 公益上 必要에 의해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事例도 많아질 것인데, 現行 制度만으로써는 이를 완전히 解決하기는 힘든다. 따라서 漁業権損失補償에 関한 더욱 明確하고 구체적인 事項을 規定하는 '漁業의 損失補償에 関한 特例法 (仮称)'을 制定하는 것이 必要하다.

2. 損失漁民들의 補償関係業務를 代行하는 機構의 設立이 必要하다.

現行 制度에 의하면 損失漁民들은 자신들의 補償希望金額을 当該 行政官庁(損失加害者)에 提出하게 하고 있으며, 行政官庁은 이를 検討한 後 자체에서 決定한 金額을 損失漁民에게 通知한다. 만약 이때 損失漁民이 이 決定에 不服하면 異議를 提起하여 水産調整委員会 등의 裁定을 받아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損失漁民들의 補償에 必要한 関係資料의 作成能力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는 権利도 다 享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 경우 損失漁民들의 権利 保護 및 正当한 権利 享有를 위해 補償에 関係되는 業務를 代行할 수 있는 団体를 인정해 주는 것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는 漁民団体로서의 水産業協同組合이나 漁村契에서 이 業務를 代行하는 것을 인정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으며, 補償業務를 代行하는 새로운 機構를 設立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다.

3. 漁業権의 損失補償에 関한 審議를 担当하는 機構의 構成員調整이 必要하다. 漁業権損失의 補償에 対해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損失漁民들이 水産調整委員会나 土地収用委員会에 裁定申請을 하면 이들 両機構에서 補償에 関한 事項을 審議, 裁定을 担当하게 된다. 그런데 水産調整委員会에서는 漁業権損失補償뿐 아니라 漁業에 관한 調整과 水質汚染에 대한 紛争까지도 審議하며, 그 構成員은 委員長, 副委員長, 기타水産分野委員, 水質汚染分野委員으로 되어 있다.

漁業権의 損失補償問題는 漁民들의 生存과 직결되어 있는 問題이므로 補償의 裁定을 担当하는 機構에는 問題의 성격상 漁民代表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埋立工事 등으로 인해 漁業権損失을 가져온 경우도 協議가 成立되지 않으면 土地収用委員会에서 그 裁定을 担当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漁業権損失의 審議를 担当하는 現機構를 그대로 存続시키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의 審議에서만은 水産業, 法律問題, 補償이나 評価問題에 관한 専門家 및 漁民代表가 모두 참석하여 그 業務를 担当토록 해야 할 것이다.

4. 損失漁民에 対한 移住対策 및 転業対策을 確保해 주어야 한다.

漁業權의 損失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잃은 漁民中의 일부는 隣近漁場의 同種漁業이나 他漁業에 종사하기도 하며, 혹은 自力으로 他産業으로 転換하기도 한다.

그러나 転業能力이 없는 일부의 漁民들은 많은 困難을 받으며, 무작정 都市로 떠나는 事例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移住対策은 社会政策的인 観点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関한 特例法'에 의하면 事業施行者는 公共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土地 등을 提供함으로 인하여 生活根拠를 喪失하게 되는 者를 대상으로 移住対策을 樹立, 実施케 하고 있으나, 漁業権의 損失補償에 관한 諸規定에서는 이러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条項은 없다. 따라서 漁業権損失補償規定에도 이러한 内容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消極的인 対策에 불과한 것이고 漁業権損失에 대한 積極的인 事後対策으로서는 補償金을 支給하는 이외에 最少限의 転業対策까지도 確保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転業対策 내지 移住対策으로서는 ① 「漁村새마을運動」의 一環으로 「새마을工場」을 지어 損失漁民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方法, ② 農耕地造成을 위한 埋立, 干拓事業時, 그 埋立地나 干拓地에 損失漁民들을 대상으로 融資金을 支給하여 우선적으로 移住시키고, 融資金償還에 特恵를 주는 方法, ③ 転業에 必要한 技術指導 등을 例로 들 수 있다.

Ⅰ.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沿岸漁業은 대체적으로 零細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들의 數는 他漁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全体漁業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重도 대단히 크다.

이러한 沿岸漁業에서는 漁業権이라는 일종의 特権을 부여받아 操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沿岸漁場의 資源 및 漁具漁法의 性格上 一定漁場을 排他独占的으로 操業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비교적 資本制化 된 漁業으로부터 零細漁民들의 生存을 保障하기 위한 社会政策的인 観点에서 이들에게 他人이 그 漁場에서 操業하는 것을 排斥할 수 있는 権利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漁業権漁業(沿岸漁業中 漁業免許를 받은 漁業)에 있어 어떤 制限을 加하거나 漁業権 자체를 消滅시켜야 할 必要가 있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 많은 問題가 惹起되고 있다. 물론 漁業権을 取消하거나 漁業을 制限할 때, 그에 대한 補償을 해주기는 하나 이것으로써 모든 問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補償에 대해서는 現行制度上 많은 法規定을 두고 이에 의해 補償을 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補償制度 자체가 몇가지의 問題点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問題点으로 인하여 補償利害関係者들의 利害対立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事例가 더욱 많아질 것을 예상할 때, 現行制度만에 의해서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란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補償問題는 漁業者의 生存問題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욱 심각한 問題가 된다. 그리하여 現行 補償制度가 가

지고 있는 問題点을 해결하여, 補償을 둘러싼 利害関係者 双方에 正当한 補償이 行해질 수 있도록 할 必要性이 提起되는바 本研究도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우리나라의 漁業制度上 漁業은 免許漁業, 許可漁業, 申告漁業의 셋으로 大別된다. 그런데 이들 漁業中 損失에 대해 補償을 받을 수 있는 漁業으로 免許漁業(=漁業権漁業)만을 明示하고 있다. 그러나 沿岸漁場에서 操業하는 漁業中에서도 免許를 받지 않은 漁業이나 기타 許可漁業, 申告漁業의 損失에 대하여 補償이 必要치 않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本研究에서는 기본적으로 漁業権漁業만을 研究의 対象으로 하며, 漁業権漁業에 있어서의 漁業権損失 및 그 補償의 意義, 根拠를 살펴보고 現行補償制度가 가지고 있는 問題点을 分析하며 아울러 그 改善을 위한 몇가지의 方案을 提示하는 것을 研究의 範囲로 한다.

研究方法으로서 漁業以外의 補償制度, 그 중에서도 특히 土地의 収用에 따른 補償制度를 많이 参考하였으며, 漁業権의 損失額을 算定하는 方式에 있어서도 一般 不動産의 評価方法, 会計学的인 評価方法을 많이 使用하였다. 또 漁業権의 損失発生地域에서 蒐集한 資料로써 問題点分析에 使用하였다.

Ⅱ. 漁業權의 槪念

1. 漁業權의 定義

漁業權은 '行政官庁의 免許에 의하여 一定한 水面에서 排他独点的으로 特定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이다' 라고 定義할 수 있다. 즉 漁業權은 行政官庁의[1] 免許라는 行政処分에 의해 発生하는 것이며, 이 免許를 받은 者(以下 漁業權者라고 한다)는 자기가 免許를 받은 一定水面의 範囲内에서는 他人이 操業하는 것을 排斥할 수 있다.

가. 漁業權의 発生

漁業權은 行政官庁의 免許에 의하여 発生하는데 이러한 免許는 行政官庁의 自由裁量処分에 속하는 것이나, 現行 制度上 免許에 優先順位가 定해져 있고 免許禁止의 規定 등도 있으므로[2] 그 限度内에서는 羈束処分의 性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現行 水産制度上에 있어서의 漁業權取得経緯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一定水域에 대해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가 養殖漁業과 第1種 내지 第3種 共同漁業에 있어서는 漁場의 区域 1件마다 定置漁業에 있어서는 漁具 1具에 대하여 그 漁具를 부설하고자 하는 水面을 区劃하여 ㉠ 漁業의 種類 ㉡ 漁業의 名称 또는 漁具의 名称 ㉢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의 位置와 区域 ㉣ 使用할 漁船数, 漁船別屯数 및 馬力 ㉤ 採捕物 또는 養殖物의 種類 ㉥ 漁業의 時期 ㉦ 免許를 받고자 하는 期間 ㉧ 申請者의 住所와 姓名 등을 記載한 申請書를 当該水面을 관할하는

註 1) 이때 行政官庁이라 함은 서울 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및 道知事를 가리킨다.

2) 水産業法 第16条 및 第27条 参照

市長, 郡守를 거쳐 道知事(서울 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包含)에게 提出한다. 그리고 이때의 申請書에는 ㉠ 免許를 받고자하는 水面의 位置 및 区域図 ㉡ 事業計劃書 ㉢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의 일부 또는 全部가 他人의 所有 또는 占有에 속하거나, 다른 漁業権의 保證区域이나 漁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될 때에는 그 所有者, 占有者 또는 漁業権者의 同意書, 다만 현재의 漁業権者보다 앞서 免許를 받았던 者가 같은 漁場에서 免許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漁業権者의 同意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書 ㉣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団体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資格을 証明하는 書類 ㉤ 申請者가 漁村契인 경우에는 漁村契의 総会議事録 ㉥ 養殖漁業에 있어서는 免許를 받은 후 当該水面에 設置할 施設의 細部計劃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② 免許申請을 받은 道知事는 水産庁長의 承認을 받은 漁場利用開発計劃의 範囲 안에서[3] 免許를 하여 준다. 이때 免許와 동시에 漁業을 免許한 行政官庁(道知事)은 지체없이 ㉠ 免許番号 ㉡ 漁業의 種類, 名称과 漁具의 名称 ㉢ 漁場의 位置 ㉣ 採捕物 또는 養殖物의 種類 ㉤ 漁業의 時期 ㉥ 漁業権의 存続期間 ㉦ 免許日字 ㉧ 漁業権者의 住所 및 姓名 ㉨ 漁業의 制限 또는 条件 등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節次를 거친 후에 漁業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가 漁業免許登録을 마쳐야 漁業権이 取得되며, 그로 인한 行為가 有效하게 되는 것이다.

나. 漁業権漁業의 対象水面

1) 漁業権漁業漁場과 그의 独占的 利用

漁業権을 "一定한 水面에서 排他独占的으로 特定漁業을 할 수 있는 権

註 3) 1976. 11. 26 農水産部令 第665号 "漁場의 利用 및 開発計劃의 承認申請에 関한 規則" 参照

利"라고 할 때, 이때의 一定한 水面이란 漁業權을 가지고 排他独占的으로 操業하는 場所(海域)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漁場은 距岸距離를 基準으로 沿岸漁場, 近海漁場, 遠洋漁場으로 区別하기도 하나 漁場의 類型分類는 漁業의 分類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漁業權의 特性인 排他独占性의 大小에 의하여 漁場을 分類해 보면 ① 経済的価値가 크고, 位置固定, 排他独占的占有利用의 必要性이 큰 漁場 ② 経済的価値가 크고 位置固定, 排他独占的 占有利用의 必要性이 작은 漁場 ③ 経済的価値가 작고, 位置固定, 排他独占的 占有利用의 必要性이 큰 漁場 ④ 経済的価値가 작고, 位置固定, 排他独占的 占有利用의 必要性이 작은 漁場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①,③,④가 沿岸漁場에 속하는데, 漁業權은 주로 이 沿岸漁場을 対象으로 하여 免許되고 있다. 즉 ①은 大型定置漁業漁場 및 大規模養殖漁場이 그 대표적인 例이며 大型地引網漁業漁場도 이에 속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때는 주로 定置漁業權, 養殖漁業權 또는 第2種 共同漁業權, 第3種 共同漁業權의 대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後述하기로 한다. ③은 小型定置漁業漁場 등이 이에 속하며 ④는 주로 小規模의 釣漁場, 捕貝採藻業 및 기타 雜漁業의 漁場이 된다. (第1種 共同漁業權의 대상이 됨) 그러나 이러한 沿岸漁場에서 操業하는데는 반드시 漁業權이 必要한 것은 아니나, 漁業者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収益을 確保하기 위한 실제상의 必要에 의해서 沿岸漁場을 대상으로 個人 또는 団体가 漁業權을 부여받아 漁業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沿岸漁場에 排他独占性이 必要한 理由로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水産業構造의 二重性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例로부터 많은 漁民들이 沿岸漁場을 중심으로 漁業에 종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들이 우리나라 水産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후 比較的 資本制化된 漁業이 発達하여 진출하게 됨에 따라 必然的으로 많은 問題가

惹起되었다。 즉 沿岸零細漁業은 従事漁民数나 漁業経営体数에 있어서 絶対多数를 차지하고 있으나 生活水準은 相対的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経済的 能率만을 一般的으로 強要하여 一部 資本化된 漁業이 우수한 装備를 가지고 沿岸漁場에서 操業하는 것을 방임하게 되면 零細漁民들이 잡을 수 있는 漁獲物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 漁村을 등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失業 등의 심각한 社会問題를 惹起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漁業権制度에 의하여 沿岸漁場을 広範囲하게 封鎖하고 이를 細分하여 排他独占的으로 支配케 할 必要가 있는데, 이것은 韓国経済의 後進性과 漁業構造의 後進性의 法律的 表現이다.[4]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漁業과 漁獲対象物의 性格에 따른 技術的인 관점에서 沿岸漁場을 排他独占的으로 利用할 必要도 있다。 漁場을 漁法과 漁獲対象物을 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① 漁場이 固定되어 있는 것

㉠ 漁法이 固定되어 있는 것……定置漁業漁場

㉡ 対象이 固定되어 있는 것……自然産貝藻類採取漁場

㉢ 漁法과 対象이 모두 固定되어 있는 것……貝藻類養殖場

② 漁場이 比較的 固定되어 있는 것

㉠ 漁法이 比較的 固定되어 있는 것……地引網, 船引網漁業漁場

㉡ 対象이 比較的 固定되어 있는 것……沿岸地先漁場

③ 漁場이 沿岸에서 移動하는 것……小型動力船에 의한 諸漁業漁場

④ 漁場이 近海, 遠洋에서 移動하는 것……近海, 遠洋漁業漁場

위의 諸類型中 ①~③이 沿岸漁場에 該当된다。 이중 ①은 一定期間 一定水面에 排他独占性이 確保되지 않으면 漁業으로서 成立되기 어려으므로 水面의 排他独占的인 利用이 不可避하다。 단 ①의 ㉡은 固定的漁法에 의한 私的独占性은 약하나 資源의 共同管理上 採捕時期, 採捕方法에 대한

註 4) 沿岸漁場評価教授団 "沿岸漁場利用実態調査研究" 1977. 12. p 31

規制가 必要하므로 地先漁民에 의한 共同占有 혹은 団体的支配가 必要하다.

②의 ㉠은 漁法이 比較的 固定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①의 ㉠만큼 独占的利用의 必要性이 강하지는 않으나 私的独占이 成立될 수도 있다. 한편 ②의 ㉡은 ①의 ㉡과 같은 私的独占은 成立하지 않으나 団体独占 내지 支配는 可能하다.

③, ④의 경우는 漁獲対象物의 移動이 매우 심하므로 排他独占的인 支配가 成立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排他独占的인 漁場利用이 可能한 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現行制度上 그것을 認定하고 있다. 즉 ①의 ㉠은 定置漁業権 내지 第3種 共同漁業権, ①의 ㉡은 第1種 共同漁業権 ①의 ㉢은 養殖漁業権 ②의 ㉠과 ㉡은 第2種 共同漁業権 내지 第3種 共同漁業権 등의 名称으로 그 漁場에 漁業権이 주어진다.

以上에서 보아온 두가지 原因에 의하여 沿岸漁場에 排他独占的 利用権 혹은 支配権이 認定된다. 다시 말하면 多数의 零細漁民들의 生計保障을 위한 社会政策的 観点에서 漁業権을 부여함으로써 그 漁場의 排他独占을 認定하고 있고 또 漁撈技術上 一定漁場을 排他独占的으로 利用할 必要가 있을 뿐만 아니라, 漁獲対象物인 水産資源의 保存 내지 増殖上의 必要에 의하여 集団을 대상으로 独占的 漁場利用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러 要件들에 부합하는 漁場이 沿岸漁場이며, 따라서 漁業의 免許는 沿岸漁場을 대상으로 하여 漁業権을 取得케 하는 行為라고 할 수 있다.

2) 実定法上의 漁業権漁業漁場

現行制度上의 漁業別 免許漁場区域[5]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註 5) 漁業権의 種類는 定置, 養殖, 第1種, 第2種, 第3種 共同漁業権, 内水面漁業権의 6가지이나 앞의 5가지 만을 보기로 한다.

가) 定置漁業漁場区域

定置漁業漁場区域은 다음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定置漁業이라도 漁具의 명칭에 따라 그 漁場区域은 달라진다.

나) 養殖漁業漁場区域

養殖漁業漁場区域에 대해서는 現行法上 그 한계를 규정하는 条項은 없다. 현재의 既開発된 養殖技術水準에서는 養殖漁場은 거의 浅海인데, 앞으로 養殖技術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深海漁場으로 점차 拡大될 것이며, 그 결과 距岸据離도 더욱 멀어질 것이다.

다) 第1種 共同漁業漁場

第1種 共同漁業漁場은 "当該漁場에 대한 地先漁民의 依存度, 生産実績, 対象資源의 상태 및 漁業調整 등 地域的 与件을 참작하여 最干潮時의 平均水深 10 m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도에 있어서는 15 m) 이내의 범위 안에서 道知事가 漁場의 免許한 計水深을 미리 정하고, 그 水深의 범위 안에서 水面을 実測, 区劃하고 漁場区劃線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물표 등을 연결, 명시하여 免許하여야 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무인도, 낙도, 고도 등 실질적으로 共同行使할 수 없는 水面에 대해서는 免許하여서는 아니한다.[6]

라) 第2種 共同漁業漁場 및 第3種 共同漁業漁場

第2種 共同漁業漁場은 海岸線(最干潮時의 陸地와 海面의 경계선)으로부터 500 m 이내, 第3種 共同漁業漁場은 1,000 m 이내의 水面에 限한다. (水産業法施行令 第11条第3項)

다. 漁業権의 効力(排他独占性의 問題)

漁業権은 漁業의 免許에 의해 取得되며, 일단 漁業権을 取得한 漁業権者

註6) 水産業法施行令 第11条第2項

<표－1>　　定置漁業의　漁場区域限界

漁具名称	漁　場　区　域	漁場区域図解（例示）
大敷網 大謀網	幅：신망부자부의 바다측길이（200m）의 2倍이내 長：충출선과 충출연장선（신망부자부의 바다측 길이의 10분의 3이내를 합한 길이） 起点：左右2개로 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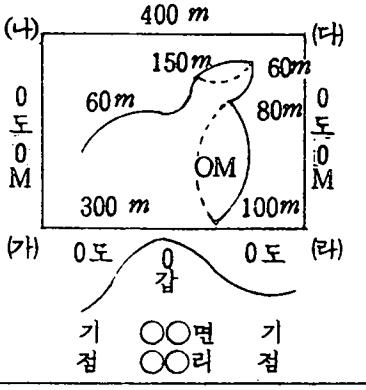
改良式大謀網 落網 角網 八角網 小台網	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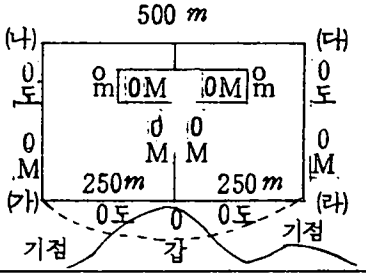
竹防簗	幅：원망의 양측첨단으로부터 신망의 최광부 외측을 연장한 선 長：원망의 양측첨단을 연결한 선의 중앙으로부터 신망의 최후단에 이르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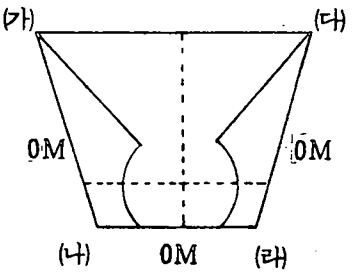

는 원칙적으로 一定漁場을 排他独点的으로 利用하며 操業할 수 있다. 즉 자기가 免許받은 漁場에서 他人이 操業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排他独点権으로써 그 漁場에서 어떤 漁業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他漁業者의 操業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漁業權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制約이 있다. 첫째 漁業權은 그 免許內容인 漁具, 漁法, 採捕 또는 養殖水産動植物의 種類, 漁業時期, 免許期間에 의하여 그 効力発生의 範囲가 特定되어 지며, 이 範囲內에서 排他的, 独占的으로 漁業을 행할 수 있는 権利이다. 따라서 免許된 水面과 免許內容을 넘어서는 漁業権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종래의 慣行에 의해 共同漁業権者는 免許받은 그 漁場에서 操業하던 者의 入漁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現行 水産業法 第40条에서도 規定하고 있으며, 종래부터 그 漁場에서 계속 操業하고 있던 者의 慣行을 尊重하여 주는 措置이다. 이러한 入漁의 慣行은 学説上의 다툼이 있으나 入漁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으며[7] 실제로 그 効力은 漁業権者의 漁業権行使에 일종의 制限을 가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漁業権을 行使하는데 있어서 漁業権을 부여받은 漁業権者는 그가 免許받은 漁場內에서는 절대적인 排他独占的 利用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入漁慣行者의 入漁를 排斥할 수 없다는데 漁業権의 効力의 限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漁業権의 性格

가. 私権으로서의 漁業権

漁業権은 私権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그러나 他私権에 비하여는 公権的인 性格이 강한데 이것은 漁業権漁業漁場의 有限性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土地와도 비슷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漁業権을 부여받아 操業하는 漁業権漁業은 원래 零細漁民保護라는 社会政策的

註 7) 法規定으로 明示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権利에 가깝다는 大法院判例(大法 63.2.28 判 62조 882호)가 있다.
沿岸漁場評価教授団, ibid p276

인 觀点과 漁業技術上 그 漁場에서 操業할 것이 必要하므로 漁業權이라는 特權을 부여받아 행하는 漁業이다. 그런데 海岸은 매우 広範囲하기는 하나 그것이 모두 漁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資金調達能力이 약한 零細漁民의 경우에는 그 漁業対象海域으로서의 漁場은 더욱 한정되게 된다. 이렇게 漁場이 한정되게 됨으로써 그 자체 高度의 公共性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短期的으로는 経済内的 問題로 인하여 漁業權漁業漁場의 外延的 拡大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므로 沿岸零細漁民들의 生活保障과 沿岸零細漁業의 均衡있는 発展을 위해서는 限定된 漁業權漁業漁場을 合理的으로 利用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이 限定된 漁場을 가장 合理的으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個別 漁業者들의 자유스런 行動에 一任하여서는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없으므로 각 漁業權에 公法的 制約을 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漁業權은 特定한 一個人이나 特定団体(漁村契나 水協 등)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그 根幹은 私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財産權으로서의 漁業權

漁業權은 財産權으로서의 性格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漁業이 経済的 事業이고 経済的으로 가치있는 利益의 享受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排他的, 独占的으로 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인 漁業權은 당연히 財産權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물론 漁業權은 公權的 性格이 강한 私權이므로 그 財産權的 性格에 있어서도 많은 制約이 있다.

다. 物權으로서의 漁業權

漁業權이 物權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 肯定的인 立場과 否定的인 立場이 있다. 前者는 物權은 物을 支配할 수 있는 權利인데, 이것은 実力을 가지고 權利者의 主張과 法에 의하여 物을 支配하고, 그의

生活上의 必要를 만족시키기 위한 権利이므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漁業権은 物権으로 보며 따라서 物権的 効果를 부여함은 당연하다는 主張이고, 後者는 漁業権은 民法上의 物을 支配하는 権利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物権은 아니라는 主張이다. 그런데 水産業法 第24条 第2項에 "漁業権은 物権으로 취급되며 土地에 関한 規定을 準用한다 라고 하고 있다. 즉 漁業権은 法에 의하여 物権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規定은 漁業権이 一定水面에서 特定漁業을 排他独占的으로 営為하여 그 利益의 享受를 一般人에 대하여 保護받는 法律上의 힘을 가진 絶対権이라는 점에서 土地에 관한 物権과 그 権利의 性質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漁業権은 一般的인 物権과 같이 有形의 物件을 支配하는 権利가 아니며, 特許権, 商標権, 鉱業権, 地上権, 電話加入権 등과 같은 法律上 保障되는 特権의 一種이다. (会計学的 表現을 빌면 無形固定資産의 一種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漁業権은 특히 鉱業権과 비슷한 性格을 가지므로 "漁業権은 鉱業権과 같이 物件을 直接支配하지는 않으나 物件을 専属的으로 取得할 수 있는 権利로 이는 準物権이며 物権에 準한다[8]고 하여 그 物権的인 性格을 전부 認定하지 않는 見解도 있다.

라. 漁業権에 대한 制約

앞에서 漁業権은 私権的, 物権的, 財産権的인 性格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現行 制度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制約을 두고 있다.

1) 質権設定의 禁止

水産業法 第24条第3項에 "民法中 質権에 관한 規定은 漁業権과 이를 目的으로 하는 権利에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漁業権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質権을 設定하

註 8) 郭閏直, 民法総則, 博英社, 1977. p.89

게 되면 漁業權의 占有를 옮겨야 하는데 그치고 質權設定者인 漁業權者는 權利의 占有가 옮겨졌으므로 漁業權을 行使할 수 없게 되며 放置의 狀態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免許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漁業權에 대한 質權設定의 禁止는 表面上으로는 漁業權에 制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実質的으로는 漁業權者를 保護하는 役割을 한다.

2) 貸付의 禁止

水産業法 第28条에 의하면 "漁業權은 貸付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漁業權의 単純한 利權化를 막고 漁業權者에게 漁業權을 고착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移転, 担保의 制限

移転性과 担保性은 財産權의 매우 중요한 內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漁業權에 대해서는 水産業法에서 이 移転과 担保性에 制約規定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共同漁業權과 共同漁業權이 아닌 경우 각각 相異하게 定하고 있다. 즉 水産業法 第30条에 "共同漁業權은 이를 移転하거나 担保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共同漁業權의 移転, 担保는 禁止된다. 그런데 共同漁業權이 아닌 漁業權(定置, 養殖漁業權)에 대해서는 同法 第29条第1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리적으로 그 移転은 금지되나, 1年이 경과한 후 道知事의 許可를 받는 경우와 相続의 경우는 漁業權의 移転이 可能하며, 担保에 대해서는 禁止規定이 없는 것으로 보아 共同漁業權 以外의 漁業權의 担保는 可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漁業権의 種類 및 現況

가. 漁業權의 種類

漁業權은 漁業權漁業의 対象이 되는 漁獲物의 性格에 따라 그 採捕方法 혹은 造成方法 등을 基準으로 하여 養殖漁業權, 定置漁業權, 第1種 共同漁業權, 第2種 共同漁業權, 第3種 共同漁業權, 內水面漁業權의 6가지가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內水面漁業權을 除外한 5가지만을 対象으로 하기로 한다.

1) 養殖漁業權

養殖漁業權은 養殖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하며, 養殖業을 一定한 水

面에서 区劃, 기타 施設을 하여 養殖하는 漁業이다. 이러한 養殖漁業権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内容上의 限界問題

養殖이란 人工手段을 加하여 水産動植物의 成育, 増加를 図謀하는 行為라고 할 수 있는데, 単純히 一定期間 동안 保存 내지 蕃息에 그치고 資源의 数나 量의 増加를 가져오지 않는 畜養은 養殖漁業権의 対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

나) 漁業権主体의 優先順位에 関한 問題

日本의 경우, 定置漁業権과 区劃漁業権(우리나라의 養殖漁業権에 該当)은 그 漁業権의 内容인 漁業을 直接 経営하는 者에 대해서만 免許하는 経営者免許漁業権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漁業들은 相当한 資金을 要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経営者가 特定되는 漁業이므로 組合管理優先은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自営할 수 있기만 하면 되므로 組合이 経営할 意思와 能力만 있으면 免許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地先漁民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共同経営의 必要性이 認定될 때에는 漁村契가 모든 漁業権免許의 第1順位가 된다. (水産業法第27条第4項 参照) 그런데 大型養殖業의 경우는 그 資金調達能力의 限界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大資本을 調達할 수 있는 経営者에 의해 많이 経営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問題에 비추어 免許의 優先順位를 組合 또는 契에 부여할 必要가 있는 것과 経営者漁業権의 対象이 될 수 있는 것을 所要資本 등을 고려한 基準에 의하여 区別할 것이 必要하다. 이리하여 前者에 대해서는 組合이나 契에 우선적으로 免許함을 原則으로 하되 一般漁業者에게도 次順位의 適格性을 갖도록 하여 水面의 綜合的인 利用管理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다) 養殖漁業의 採捕方法

水産業法 第8条第4項에 의하면 "養殖漁業의 採捕方法을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同施行令 第9条 및 別表 13에 그 採捕方法을 定하고 있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表2〉이다.

〈表 - 2〉　　養殖漁業의　名称。区分。漁場水深。水面限界。

漁場間距離　및　採捕方法.

名　称	養殖物의　種類	漁場水深	水面限界	漁場間距離	採捕方法(면허시에 적정방법지정)
1.살포식					
(간석지)	백합。꼬막。반지락 가무락。기타 유용 패류	0미터	100헥타 이내	100미터 이상	도수。기타　채취기
(천해)	피조개。새꼬막。홍합。기타　유용수산 동식물	40미터 이내	30	200	도수。나잠。범선형 망。기선형망。잠수기
2.투석식					
(간석지)	굴	0미터	20	100	도수
(천해)	전복。소라。돌김。 우무가사리。꼬시래기。기타　유용수 산동식물				도수。나잠채취기。 잠수기
3.건홍식					
(일본홍)	김。파래。굴	0	10	100	도수
(염　홍)	김。파래	0	10	200	도수。선상도수
(부　홍)	김。파래	5	20	300	도수。선상도수
(망　홍)	김。파래	7	20	300	선상도수。선상채취기
(부류망홍)	김	10	20	500	선상도수。선상채취기
4.수하식					
(간이)	굴。굴채묘。기타 유용수산동식물	2	5	100	도수。선상도수
(연승)	굴。진주패。홍합	20	20	300	선상권양기

그런데 이 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潛水器와 機船桁納을 이용한 採捕方法으로서 同施行令 第9条第2項에 의하면 이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漁業規模別 許容定限数 및 管理方法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農水産部令 691号 「養殖物採捕方法 및 養殖漁場施設基準에 관한 規則」에 의하면 免許時에 適正方法을 指定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採捕方法 여하에 따라서는(특히 潛水器와 機船桁網)免許対象 水産動植物 이외의 動植物을 採捕하거나 隣近漁場을 侵犯하는 등의 不法漁撈가 行해질 염려도 있다.

라) 施設基準에 대한 問題

養殖漁業権者가 그의 漁場에 설치하여야 할 施設은 農水産部令 691号에 의하면 〈表3〉과 같다.

이러한 養殖施設基準設定을 본래 漁場運営의 科学化를 도모하여 適正生産量의 確保 維持와 밀식 또는 병충해에 의한 피해의 事前予防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 施設基準을 設定하는데 있어 南海의 一地区만을 標本으로 삼아서 그곳의 特定養殖物에 유효한 것을 一律的으로 전국의 基準으로 하였기 때문에 他地方。他品種에는 적합치 않으며 養殖水産物의 社会的需給만을 염두에 두고 定한 나머지 施設基準이 歪曲制定되었으며 斃死現象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設定되었고, 더구나 政府의 施設基準도 1972年의 基準이 '74年, '77年의 改正을 통하여 자주 変形되는 등 일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9])

忠武를 중심으로 한 굴養殖業에 대한 現地調査의 결과 지금까지도 굴生産이 평년에 비해 많아지면 그 価格이 下落하여 심각한 問題를 야기시키며(79年末 실제로 이 문제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밀식으로 인한 被害도 적지않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의 무분별한 免許에도

註9. 沿岸漁場評価教授団 ibid P 228.

〈表-3〉 養殖漁場施設基準(77年)

名 称	養殖物의種類	施設基準(漁場面積에 대한 施設面積의 比率)
1. 살포식(간석지)	백합, 꼬막, 기타	90%以上
(淺 海)	피조개, 새꼬막, 기타	90%以上
2. 투석식(간석지)	굴	90%以上
(淺 海)	전복, 돌김, 기타	90%以上
3. 진흙식(일본흙)	김, 파래, 굴, 기타	20%以上 25%以下
(기타흙)	김, 파래, 굴, 기타	20%以上 25%以下
4. 수하식(간 이)	굴, 굴채묘, 기타	20%以上 25%以下
	굴, 진주패, 홍합, 가리비, 미역, 다시마, 멍게 피조개, 채묘, 새꼬막채묘, 기타	5%以上 10%以下
(멧 옥)	굴, 굴채묘, 진주패, 기타	5%以上 10%以下
5. 가두리	방어, 도미, 기타	5%以上 10%以下
	새우, 패류축양식, 기타	5%以上 10%以下

그 原因이 있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잇다른 施設基準의 変更에 의한 原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水面의 綜合的,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全海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海況과 地形 및 기타 条件 등 그 地域的 特性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施設基準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以上에서 養殖漁業権에 있어서 問題가 되고 있는 몇가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養殖漁業은 養殖対象物에 따라서 굴養殖業, 미역養殖業, 김養

殖業 등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나 水産業法施行令에 의하면 表2에서 보는 바와같이 養殖方法에 따라 그 명칭이 살포식, 투석식, 건풍식, 수하식, 가두리식, 축제식의 6가지로 나뉜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굴수하식養殖과 같이 養殖対象物과 養殖方法을 붙여 쓰는데, 이 方法을 一般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定置漁業権

定置漁業権은 一定한 水面을 区別하여 一定漁具(大敷網, 大謀網, 改良式大謀網, 落網, 角網, 八角網, 小台網 또는 竹防兼)를 定置하여 採捕하는 漁業을 할 수 있는 権利이다. 定置漁業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内容上의 限界問題

定置漁業은 一定한 場所에 一定期間 漁具를 定置하여 行하는 漁業이므로 潮流 기타 自然的 状況에 따라 약간의 移動은 무방하나 漁具나 副漁具를 移動시켜서 漁獲하는 것들은 定置漁業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明定할 필요가 있다.

나) 漁業権主体의 優先順位에 関한 問題

현재의 定置漁業은 그것이 아무리 地先水面에서 地先漁民의 共同経営에 알맞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法定의 網漁具로 영위되는 限, 定置漁業権의 対象은 되나 共同漁業権의 対象은 되지 못한다. 즉 前述한 養殖漁業権과 같이 定置漁業権도 経営者免許漁業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定置漁業의 他漁業(主로 第3種 共同漁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10], 一定水深以浅의 많은 資本을 필요로 하지않는 定置網漁業

註10.) 실제로 定置漁業権과 第3種 共同漁業権의 対象水面이 隣近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은 第3種 共同漁業權의 対象으로 하여 地先漁民의 協業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大規模이고 大資本을 요하는 一定水深以上의 定置網漁業은 個人과 漁村契 또는 水協이 同一資格으로 競願케 하게하여 優先順位 등의 条件審査에 의하여 免許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다) 保護区域設定의 問題

保護区域이란 漁業權을 保護하기 위하여 漁業權行使의 妨害가 되는 漁業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区域을 말한다. 이렇게 漁場区域 외부에 별도로 保護区域을 設定하여 그 保護区域 안에서 漁業權漁業에 방해가 되는 漁業을 制限 또는 禁止할 수 있게 한 것은 漁業權의 物權的効力이 漁場의 범위에만 限定되는데 대하여 漁場外部에서의 漁業行為로 인하여 그 漁業權의 行使에 막대한 妨害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妨害를 排除하여 漁業權의 完全有効한 行使를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区域内에 있어서 자유스러운 漁業行為에 지장을 주는 것이므로 漁業의 性格上 그 必要度가 높은 定置漁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定置漁業權의 保護区域을 보면 다음 表4와 같다.

그런데 이때 그 영향력이 매우 문제가 된다. 즉 漁業權者는 소위 前網, 後網 등을 設置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 漁場에 있어서의 排他独占權이 더욱 強化되며, 그 결과 漁場이 小数의 独占体化 할 위험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3) 共同漁業權

共同漁業權은 一定한 地域内에 거주하는 漁業者의 漁業経営上 共同利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限하여 免許되는 漁業權이다.

註11) 日本의 경우 水深 27 m以上의 것을 定置漁業權의 対象으로 하고 27 m以浅의 小定置는 共同漁業權의 対象으로 하고 있다.

〈表-4〉 漁業権保護区域

어구의 명칭	보호구역	보호구역도해(예시)
대부망 대모망 개량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신망부자부 바다측 길이 270 미터 이상의 것)	어장의 전면(가) 지점으로부터 (나)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550 m를 합한 선의 전면 2,500 미터의 수면 어장의 후면(라) 기점으로부터 (다)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550 미터를 향한 선의 후면 10 미터의 수면 어장의 바다측(나) 와 (다)에 이르는 선의 전면 550 미터의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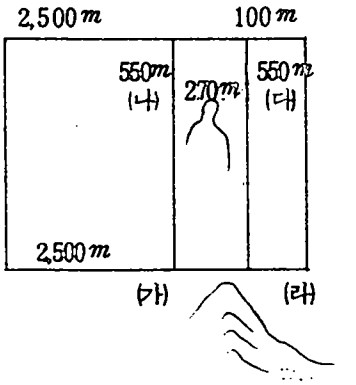
대부망 대모방 개량대모방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신망부자부의 바다측 길이 220 미터 이상 270 미터 미만의 것)	어장의 전면(가) 기점으로부터 (나)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350 미터를 합한 선의 전면 2,000 미터의 수면어장의 후면(라) 기점으로부터 (다) 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350 미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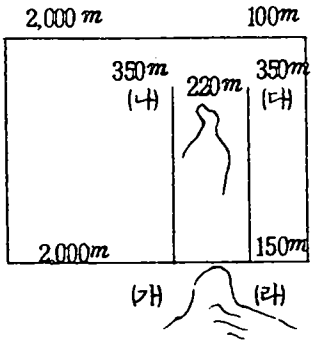

어구의 명칭	보호구역	보호구역도해(예시)
	합한 선의 후면 100 미터의 수면 어장의 바다측(나)와(다)에 이르는 전면 350 미터의 수면	
대부망 대모망 개량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 신망부자부의 바다측길이 145 미터이상 220 미터 미만의 것	어장의 전면(가) 기점으로부터 (나)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350 미터를 합한 선의 전면 1,600 미터의 수면 어장의 후면(라) 기점으로부터(다)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350 미터를 합한 선의 후면 100 미터의 수면 어장의 바다측(나)와 (다)에 이르는 선의 전면 350 미터의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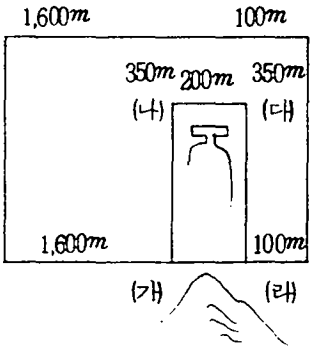
대부망 대모망 개량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 신망부자부의 바다측 길이 30 미터의 이상 145 미터 미만의 것	어장의 전면(가) 기점으로부터(나)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200 미터를 합한선의 전면 1,300 미터의 수면 어장의 후면(라) 기점으로부터(다)에 이르는 선과 그 바다측 연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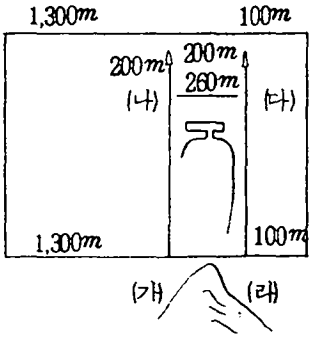

어구의 명칭	보호구역	보호구역도해(예시)
	200미터를 합한 선의 후면 100미터의 수면 어장의 바나측(나)와(다)에 이르는 선의 전면 200미터의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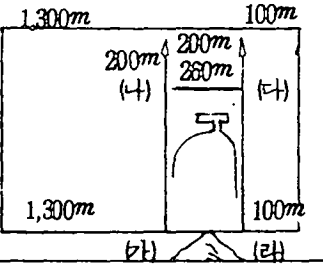
대부망 대모망 개량대모망 낙망 팔각망 소대망 } 신망부자우의 바나측길이 90미터 미만의 것	어장의 전면(가) 기점으로부터(나)에 이르는 선과 그 바나측 연장선 200미터를 합한 선의 전면 1,000미터의 수면 어장의 후면(라)기점으로부터(나)기점에 이르는 선과 그 바나측 연장선 200미터를 합한선의 후면 100미터의 수면。어장의 바나측(나)와(다)에 이르는 선의 전면 200미터의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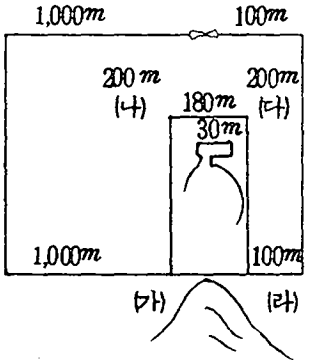
축방엽	어장의 좌우측과 후측 각선 50m이내 및 어장원망의 양측첨단으로부터 좌우50m및 그 전면 350m의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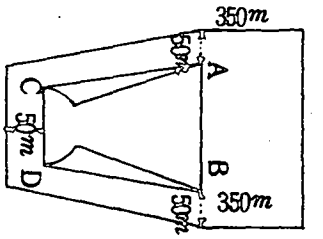
비고 1. 원망의 양단에 신망을 사진것은 위에서 정한것의 2의1의 수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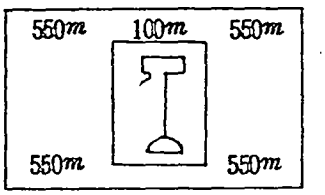

어 구 의 명 칭	보 호 구 역	보호구역도해(예시)
2. 원망의 좌우에 망구를 사진것은 위에서 정한것의 전후 양면의 지리를 합한 것의 2분의 1의 수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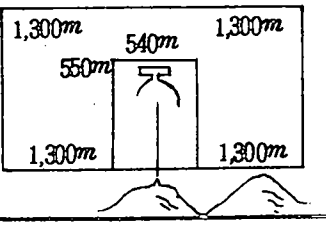

이것은 個人所有漁業權과는 그 本質을 달리하여 漁民에 의한 漁場管理라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즉 生活共同体로서의 地先村落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漁場利用權을 그대로 固定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地先漁民들이 그들의 隣近漁場(地先漁場)에서 操業하고 있던 것을 共同漁業權이라는 權利를 부여하여 그 漁場을 排他独占的으로 利用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前述한 바와 같이 社会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資本制化된 漁業으로부터 零細漁民들의 生存을 위한 社会政策的인 観点에서 距岸距離 1,000 m以内의 水域(第3種 共同漁業의 限界区域)에 대해서는 이른바 共同漁業權을 免許하여 多数의 零細民들만이 漁撈活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제적인 意味로서의 共同漁業權은 全部落民(地先漁民)이면 누구나 다 이 權利를 享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共同漁業權은 그 主体가 組合이나 漁村契인데 部落民 중에서도 組合員이나 漁村契員이 아닌 사람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權利(共同漁業權)를 享有할 수 있는 者는 組合員이나 漁村契員이 된다. 물론 共同漁業權의 対象이 되는 水面에 그 權利가 設定되기 이전부터 그 漁場을 이용하던 漁業者에 대해서는 入漁의 慣行이 인정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共同漁業權의 主体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의 하나는 共同漁業權은 全漁村住民을 이념상 受恵者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一部漁民들만

이 그 恵沢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漁村契나 組合이 漁業権者 일 경우 組合員이나 漁村契員 중에서 몇몇 일부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共同漁業을 지배하고 기타의 漁業権者들은 소극적으로 生産 分配에 참여하는 일부 漁業権者의 不在地主化現象이 그것이다.

이러한 共同漁業権이 기타의 漁業権과 다른 点은 그 성질상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漁業権의 免許主体

共同漁業権을 제외한 漁業権은 個人이 免許主体가 되나。 共同漁業権은 漁業協同組合 또는 漁村契라는 漁民団体를 対象으로 免許된다.

나) 漁業権免許의 優先順位

共同漁業権의 免許主体는 漁業協同組合 또는 漁村契 뿐이다. 물론 組合과 漁村契는 漁場所在地의 地先漁民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共同経営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든 漁業에 있어 最優先順位를 가지나。 定置漁業権이나 養殖漁業権에 있어서 그것이 특히 大規模의 것일 때에는 그 管理能力에 비추어 個人이 그 権利를 取得할 수 있다. (실제로 大資本을 가진 個人에 免許된 경우가 더 많았다)。그러나 共同漁業権에 있어서는 組合이나 漁村契는 그 取得의 最優先順位를 가질 뿐 아니라。동시에 유일한 取得主体가 되고 있다.

다) 漁業権의 権利能力

定置。養殖漁業権은 第3者의 入漁를 배제하지 않으면 技術的으로 성립할 수 없는 漁業権인데 반하여 共同漁業権은 漁法上 그러할 필요가 없고。원래 自由漁業이어야 할 것을 関係漁民에게 그 漁場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漁民団体인 組合 또는 漁村契에 그에 필요한 権限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漁業権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들 漁民団体는 ① 年 1回以上의 礁洗。築礁나 投石 ② 魚付林의 造成 ③ 種苗의 投入 ④ 기타 필요한 施設을 設置하여 当該水面의 水産動植物의 번식보호와 漁場管理의 効率化를 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共同漁業権이 다른 漁業権과 権利効力의 面에서 구별되는 点은 共同漁業権 이외의 漁業権은 그 行使에 있어서 免許의 内容의 범위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반해 共同漁業権은 위의 限界에다 漁場의 관리를 위한 義務規定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共同漁業権은 第1種 共同漁業権, 第2種 共同漁業権, 第3種 共同漁業権의 셋으로 分類된다.

(1) 第1種 共同漁業権

第1種 共同漁業権은 一定한 水面을 専用하여 貝類, 海藻類 또는 水産庁長이 定하는 定着性 水産動物[12]을 採捕하는 漁業을 할 수 있는 権利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漁業権은 漁民에 의한 資源의 保護와 自治的인 漁場管理가 필요한 경우에 免許되고 있다.

第1種 共同漁業의 区分은 水深基準에 의하고 있는데 그 水深을 道別로 10m(강원, 경북, 제주는 15m)로 一律的으로 定한 것은 미흡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規定하고 보면 地域別로 실제로 漁業権을 이용하지 못하고 有名無実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1977年 水協中央会에서 発表한 '漁村契実態調査'에 의하면 1976年末 현재 最干潮時 水深 10m가 第1種 共同漁業漁場의 限界가 되고 있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5道에 있어서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第1種 共同漁業漁場의 活用이 극히 부진하다고 한다. 따라서 漁場限界의 区分基準

註12) '76年 水産庁告示 第16号에 의하면 해삼, 성게, 문어, 낙지, 게, 갯지렁이, 우렁쉐이를 말한다.

을 定하는데 있어서 各地方의 海況。地底地形 등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地域別로 自主的인 調整에 맡기든가 道別로 그들의 상황에 알맞게 基準을 定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第1種 共同漁業漁場에 관한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기타의 漁業權漁業漁場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第2種 共同漁業權

第2種 共同漁業權은 一定한 水面을 專用하여 地引網。地槽網。船引網。賴引網。揮罹網。焚寄抄網 또는 들網을 사용하여 採捕하는 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할 수 있다.

第2種 共同漁業權은 第1種 共同漁業權과는 달리 주로 魚類를 漁獲対象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機動性이 작기 때문에 漁業權으로 排他独占性을 주어도 漁業調整上 支障이 적으나 漁業權으로 保護하지 않으면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그 漁場限界는 海岸線으로부터 500 m 이내의 水面이다.

第2種 共同漁業을 行하는 데는 그 採捕方法에 많은 문제가 있다。 즉 運用漁法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海岸을 曳網하는 漁業도 포함시킴으로써 漁業調整上 許可漁業과의 충돌을 야기할 염려가 尙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採捕方法으로 船引網을 사용하는 경우는 動力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혹은 動力船은 사용하지 못하고 無動力船에 限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第2種 共同漁業은 網漁具를 사용하되 陸岸에서 漁獲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며 船引網의 경우도 無動力船에 限하는 것이 許可漁業과의 漁業調整上 필요할 것이다.

(3) 第3種 共同漁業權

第3種 共同漁業權은 一定한 水面을 專用하여 定置漁業과 第2種 共同漁業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網漁具나 釣漁具를 사용하여 採捕하는 養殖。

定置。第1. 2種 共同漁業 이외의 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할 수 있다. 1976年 水産庁告示 第17号에 의하면 第3種 共同漁業을 建網漁業。設網漁業。引網漁業。操網漁業。集魚漁業。其他漁業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採捕方法을 指定하고 있는바 이것을 나타낸 것이 〈表5〉이다

이러한 第3種 共同漁業의 漁場限界는 前述한 바와 같이 海岸線으로부터 1,000 m 이내의 水面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表-5〉 第3種 共同漁業의 名称과 操業方法

어업의명칭	조 업 방 법
1. 건망어업	승어수망, 지망, 호망, 건망, 건간망, 낭장망, 주목망, 승망, 어전, 석전4수망, 삼각망, 5각망등등 건망어구를 설치하고 수산동물을 채포(이하 〃채포〃라 한다)하는 어업
2. 설망어업	부망, 장망(2수망, 4수망, 6수망, 8수망), 해선망등 설망어구를 설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인망어업	후리그물, 조망(새우)등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4. 조망어업	수로망, 형망등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선망어업	주망, 권망등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집어어업	사부에 의하여 채포하는 어업
7. 기타어업	1본조, 초호, 통발, 연승, 손꽁치등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① 第3種 共同漁業은 小型定置漁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定置漁業중에서도 비교적 小資本이 소요된 小規模의 것은 共同漁業으로 編入시키고 第3種 共同漁業으로서 大型定置漁業을 하는 것은 個人漁業의 성격이 강하므로 定置漁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第2種 共同漁業과 마찬가지로 許可漁業과의 調整問題가 중요하다.

나. 漁業權의 現況

1) 漁業權漁業의 生産狀況

漁業權漁業의 年度別生産量 및 總漁業 沿岸漁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表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 의하면 總漁業生産量에 대하여 淺海養殖을 포함한 沿岸漁業生産量이 차지하는 比率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즉 1967年에는 이 比率이 78.4%에 달하였으나 1978年에 와서는 52.2%로 낮아졌다.
이것은 沿岸漁業 이외의 漁業, 그 중에서도 특히 遠洋漁業이 同期間 급격히 발달하여 그 生産量이 대폭 증가한 것에도 一原因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總漁業生産量에 대하여 漁業權漁業生産量이 차지하는 比率은 同期間 大差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沿岸漁業生産量에 대한 漁業權漁業의 生産量比率은 해마다 증가하여 1977年에는 54.1%를 보였고, 1978年에는 前年에 비해 나소 떨어졌으나 49.7%로 여전히 높은 値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全体漁業에서 차지하는 漁業權漁業의 比重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여구나 沿岸漁業에 있어서는 점차 漁業權을 免許받아 操業하는 漁業權漁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漁業權漁業 中에서도 그 漁業別, 年度別 生産量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나타낸 것이〈表7〉이다. 表에 의하면 年度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漁業權漁業의 總生産量은 1977年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1978年에는 감소하였다. 즉 1967年의 漁業權漁業 總生産量은 220,773톤이였으나 1978年에는 610,184톤에 달하였다. 漁業別로 보면 同期間 그의 대체적인 變動趨勢를 보면 第1種 共同漁業의 生産量은 완만

〈表 - 6〉　　漁業權漁業의 年度別 生産量 및 그 相対的 比重

単位 : M/T, %

区分 / 年度	總漁業生産量 (A)	沿岸漁業生産量 (淺海養殖포함) (B)	漁業權漁業生産量 (C)	B/A	C/A	C/B
1967	750,349	588,092	220,773	78.4	29.4	37.5
1968	852,291	666,423	242,234	78.2	28.4	36.3
1969	862,784	600,652	207,914	69.6	24.1	34.6
1970	935,462	645,020	235,607	69.0	25.2	36.5
1971	1,073,733	653,023	267,448	60.8	24.9	41.0
1972	1,343,569	824,892	304,825	61.4	22.7	37.0
1973	1,686,484	1,012,775	428,094	60.1	25.4	42.3
1974	2,026,221	1,259,367	564,132	62.2	27.8	44.8
1975	2,134,976	1,215,435	555,352	56.9	26.0	45.7
1976	2,406,896	1,250,084	631,963	51.9	26.3	50.1
1977	2,421,273	1,303,023	704,459	53.8	29.1	54.1
1978	2,353,518	1,228,196	610,184	52.2	25.9	49.7

資料 : 農水産部。水産統計年報。1979年 및 水産庁。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에서 作成。

한 증가세를 보이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第2種 共同漁業生産量은 1974年을 고비로 격감하고 있다. 小型定置漁業이 주를 이루고 있는 第3種 共同漁業生産量은 1974年부터 다소 감소하여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定置漁業生産量은 1962年부터 1970年까지 감소하다가 그후 계속 증가하여 (단 1975年은 감소)。1978年에는 73,895M/T을 기록하였다.

〈表-7〉　　漁業權漁業의　生産量

単位：㎏

年度 ＼ 区分別	合計	第1種共同漁業	第2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	定置網漁業	浅海養殖漁業			
						小計	貝類	海藻類	其他
1967	220,773	69,396	8,620	16,814	28,812	97,131	70,680	26,421	30
1968	242,234	89,382	6,630	17,359	15,832	113,031	70,071	42,761	199
1969	207,914	77,875	8,749	19,414	15,560	86,316	64,828	21,454	34
1970	235,607	89,636	12,510	8,354	5,896	119,211	74,868	44,312	31
1971	267,448	90,953	12,487	10,436	6,351	147,221	98,354	48,818	49
1972	304,825	102,824	9,722	19,098	12,803	160,378	106,349	53,908	121
1973	428,094	107,046	17,693	22,356	20,598	260,401	116,804	143,497	100
1974	564,132	119,892	30,183	45,528	28,360	340,169	95,353	244,735	21
1975	555,352	131,995	18,232	38,196	15,533	351,396	189,514	161,797	85
1976	631,963	131,314	2,187	35,141	52,651	410,670	219,053	191,538	79
1977	704,459	128,619	2,906	27,639	54,158	491,137	254,796	236,242	99
1978	610,184	111,967	2,861	30,379	73,895	391,082	209,747	181,165	170

資料：　水産庁。水産業動向에　関한　年次報告書　1975. 1979年에서　作成

漁業權漁業　中에서　가장　큰　폭으로　生産量이　증가한　漁業이　養殖業이나　浅海養殖業生産量은　1962年부터　1978年　사이에　1969年。1978年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1978年에는　391,082㎏으로　1962年에　비하여　거의　20배나　증가하였다.

2)　漁業權의　分布

1978年末　현재　漁業種類別。地域別　漁業權의　件数는　〈表8〉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78年末　현재　内水面漁業權을　제외한　定置。養殖。　弟

1. 2. 3種 共同漁業權数는 総 8,916件으로, 이중 定置漁業權은 658件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養殖漁業權은 5,889件으로 전체의 66%, 共同漁業權은 2,369件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共同漁業權 中에서도 第1種 共同漁業權이 1,429件으로서 전체 漁業權의 16.0%, 共同漁業權의 60.9%를 차지하고 있고, 第2種 共同漁業權은 98件으로 전체의 1.1%, 共同漁業權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第3種 共同漁業權은 842件인데, 이것은 전체의 9.4%, 共同漁業權의 35.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漁業權의 地域別 分布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定置漁業權은 総 658件인데, 경남이 251件에 全定置漁業權의 38.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이 133件에 20.2%, 강원이 109件에 16.6%, 전남이 101件에 15.3%, 제주가 25件에 3.8%, 전북이 20件에 3.0%, 충남이 19件에 2.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국 11개 市·道에서 서울, 부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7개 道에 分布하고 있고 그것도 경남, 경북에 全定置漁業權数의 약 60%가 集中되어 있다.

② 養殖漁業權은 総 5,889件인데 전남이 2,478件으로 가장 많고, 따라서 全体 養殖漁業權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42.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경남의 1,673件에 28.4%, 충남의 662件에 11.2%, 전북의 388件에 6.6%, 경북의 361件에 6.1%, 경기의 246件에 4.2%, 부산의 34件에 0.6%, 강원의 31件에 0.5%, 제주의 16件에 0.3%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 養殖漁業權은 他漁業權에 비하여 그 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울, 충북을 제외한 全市道에 分布하고 있으나 전남, 경남의 両道에 70% 이상이 있다.

③ 第1種 共同漁業權은 総 1,429件인데 전남이 575件으로 全体 第

〈表-8〉　　漁業權의　分布（1978年　現在）

漁業別		計		서울	釜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定置漁業		658	件數	-	-	-	109		19	20	101	133	251	25
			%	-	-	-	16.6		2.9	3.0	15.3	20.2	38.1	3.8
養殖漁業		5,889	件數	-	34	246	31		662	388	2,478	361	1,673	16
			%	-	0.6	4.2	0.5		11.2	6.6	42.1	6.1	28.4	0.3
共同漁業	第1種	1,429	件數		6	63	80		59	25	575	152	350	119
			%		0.4	4.4	5.6		4.1	1.7	40.2	10.6	24.5	8.3
	第2種	98	件數			2	5				15	41	35	
			%			2.0	5.1				15.3	41.8	35.7	
	第3種	842	件數			12	66		126	58	439	14	127	
			%			1.4	7.8		15.0	6.9	52.1	1.9	15.1	
	計	2,369	件數	-	6	77	151		185	83	1,029	207	512	119
			%		2	3.3	6.4		7.8	3.5	43.4	8.7	21.6	5.0
地域別漁業權數 合計			件數	0	40	323	291		866	491	3,608	701	2436	160
			%	0	0.4	3.6	3.3		9.7	5.5	40.5	7.9	27.3	1.8

資料：水産庁

1種　共同漁業權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남으로　350件에　24.5%，경북이　152件에　10.6%，제주가　119件에　8.3%，강원이　80件에　5.6%，경기가　63件에　4.4%，충남이　59件에　4.1%，부산이　6件에　0.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것도　서울，충북을　제외한　全市道에　分布하고　있으며　전남，경남에　그의　65%가　集中되어　있다.

④　第2種　共同漁業權은　總　98件인데，경북이　41件에　41.8%，경남

이 35件에 35.7%를 차지하고 있어 이 兩道에 전체의 약 80%가 集中되어 있다。 그 다음이 전남으로 15件에 15.3%,강원이 5件에 5.1% 경기가 2件에 2.0%를 차지하고 있다.

⑤ 第3種 共同漁業權은 總 842件인데 서울。부산。충북을 제외한 全道에 分布하고 있다。 즉 전남이 439件으로 전체의 52.1%가 전남에 있으며。그 다음이 경남으로 127件에 15.1%。충남이 126件에 15.0%。강원이 66件에 7.8%。전북이 58件에 6.9%。경북이 14件에 1.7%。경기가 12件에 1.2%를 차지하고 있다.

以上에서 漁業權種類別。地域別로 漁業權의 分布를 살펴 보았으나 地域別(道別)全漁業權数의 合計를 보면。전남이 1978年末 현재 우리나라 全体 漁業權数 18,916件의 40.5%에 해당하는 3,608件으로 가장 많고,경남이 2,436件으로 27.3%。충남이 866件으로 9.7%。경북이 701 件으로 7.9%。전북이 491件으로 5.5%。경기가 323件으로 3.6%。강원이 291件으로 3.3%。제주가 160件에 1.8%。부산이 40件에 0.4%를 차지하고 있는데,전남과 경남지방에 分布하고 있는 漁業權이 전체의 67.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兩道에서는 他市道에 비하여 漁業權漁業이 매우 盛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漁業權의 損失과 그 補償

1. 漁業權損失의 意義와 原因

가. 漁業權損失의 意義

漁業者가 免許를 받아 漁業權漁業을 經営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利益을 얻고 그 漁業이 成長해 나갈 것이라는 保障은 없다. 왜냐하면 어떤 産業이든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危險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經営危險은

① 經営体内部에서 발생하는 内生的危險

② 經営体外部의 社会經済的 要因의 変動에 따라 생기는 外生的危險

③ 人間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自然的 条件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外部的 危險의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対象으로 하고 있는 漁業權損失은 外生的危險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漁業權漁業에서 漁業權은 일종의 權利로 認識되고 있는데, 漁業權이 私權, 物權, 財産權的인 性格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会計学的인 表現을 빌면 일종의 無形固定資産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을 가지는 漁業權은 免許라는 行為에 의하여 発生하는데, 이것을 所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權利나 資産으로서의 漁業權은 所有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그 所有者인 漁業者의 漁業収益을 増大시킬 수 있을때 비로소 漁業權은 그 存在意義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漁業者가 行政官庁으로 부터 漁業을 免許받아 그 免許 받은 漁場에서 漁業을 經営하고 거기서 漁業収益을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漁撈行為를 하는 것을 「漁業權의 行使」라고 定義하기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權利를 行使하는데 있어 무제한

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한 限界內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는 漁業權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때 漁業權을 行使하는데 있어 어떤 制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行使가 禁止되거나 制限당하게 되는 것을 漁業權漁業에서의 「漁業權의 損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漁業權漁業에서는 漁業權行使가 禁止 내지 制限당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漁業權漁業의 漁撈行為에 損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 漁業權損失의 原因

漁業權損失의 原因은 크게 公共目的을 위해(혹은 公益上의 必要에 의해) 漁業權의 行使가 禁止, 制限되는 경우와 漁業者가 스스로 그의 漁業權을 抛棄하는데 同意한 경우, 기타의 경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公共目的을 為해서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경우

가) 漁業權行使의 公共性의 배경

公共目的을 為해서는 漁業權損失을 가져올 수 있는 바, 그 근거로서는 法에 의한 것과, 漁業權漁業漁場이 가지는 屬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우리나라의 憲法에서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漁業權損失에 대한 關聯 条項을 諸法規(主로 水産業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후자는 기본적으로 漁業權漁場이 有限하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漁業權漁業은 원래 零細漁民保護라는 社会政策的인 観点과 漁業技術上 그 漁場에서 排他独占的으로 経営(操業)할 것이 필요하므로 漁業權이라는 特權을 부여받아 行하는 漁業이다.

그러나 漁業權을 부여받아 操業을 함에 있어서 그 漁場은 거의 限定되므로 이 限定된 漁場을 利用하는데는 完全한 自由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公共目的을 위해서는 漁業權損失도 가져올 수 있음은 당연하

다고 하겠다.

나) 実定法上의 公共目的을 위한 漁業権損失

公共目的을 為해 漁業権損失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① 水産資源의 増殖保護上 必要한 때

② 国防 기타 軍事上 必要한 때

③ 船舶의 航行, 碇泊, 繋留, 水底電線의 敷設, 其他 公益上 必要한 때를 말한다(水産業法 第20条 第1項). 또 同法 第69条 第2項에 의하면 遡河魚類 등의 通路에 妨害가 되는 工作物 또는 施設物이 있을 때에는 遡河魚類 등의 보호를 위해서 그 除害工事를 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든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行政官庁은 公共目的을 위해서 漁業権의 取消나 制限 등의 漁業権損失을 가져올 수 있는 処分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漁業者가 漁業権의 抛棄에 同意한 경우

漁業権은 그 免許된 漁業의 必要한 범위내에서 公有水面埋立法, 公有水面管理法에 의한 行為가 許容되는데, 公有水面埋立法 第5条에 의하면 公有水面에 관하여 権利를 가진 者(漁業権者도 포함)가 埋立에 同意하였을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은 埋立者에게 埋立을 免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漁業者가 그의 免許받은 漁場의 埋立에 同意하여 漁業権을 抛棄하게 되면 그의 漁業権은 消滅되게 된다.

3) 其他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경우

가) 免許를 받은 者 이외의 者가 漁業을 지배할 때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 이외의 者가 실질적으로 当該漁業의 経営을 支配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行政官庁은 그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가 있는데, 이때 漁業에 대한 他人의 支配限界는

① 当該漁業의 經営에 있어서 純利益의 10分의 5 이상을 他人이 차지할 때

②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후에 그 漁具와 漁船이 他人의 所有 또는 占有에 속하게 된 때이다(水産業法 第19条 및 同施行令 第23条).

이것은 漁業의 免許者인 漁業権者와 그 漁業의 支配者(経営者)가 다를 때 그 漁業은 取消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漁業権者와 経営者가 相異하다면 大資本의 漁場独占 등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와 漁業秩序를 크게 混乱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禁止하는 어떤 制度的인 措置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 그 한 手段이 漁業의 取消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나) 休業 및 漁場의 放置로 인한 漁業権의 取消

漁業免許를 받은 후 事前申告 없이 1年 이상 休業하거나 漁業者가 1年 이상 漁場을 遊休状態로 放置해서 水面의 綜合的利用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될 때도 역시 그 漁業権은 取消된다(水産業法 第21条 第1項 및 同法 第34条). 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内容으로서, 水面使用에 있어 그에 대한 専用権만 設定해 놓고 이를 遊休状態로 방치하여 둔다는 것은 水面의 綜合的利用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처사 이므로 漁業権을 取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遊休내지 休業状態로 방치하여 두는 理由가 漁業者가 漁業権漁業漁場에 대한 生産性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고 일단 漁場만이라도 確保해 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免許를 받았다가 採算이 맞지 않자 방치해 두든가, 漁業権者 자신의 어떤 사정으로 漁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간에 아무런 事前申告 없이 계속 漁場을 방치하여 두는 것은 더 이상 排他独占的인 漁場利用権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錯誤로 인한 漁業権의 取消

錯誤로 인해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하거나 이에 관한 処分을 하였을 때에는 行政官庁은 이를 取消할 수 있다(水産業法 第27条 第3項)

이때 錯誤란 行為者인 行政官庁이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이를 독립된 取消 또는 無効의 原因 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라) 漁業者의 法令違反 등

漁業者가 水産関係法에 의한 命令, 処分, 制限에 違反한 때와 外国과의 漁業에 관한 協定 등을 違反했을 경우는 그 漁業権을 取消할 수 있다(水産業法 第20条 第1項 第4号 및 5号). 이때는 漁業者에게 그 取消의 責任이 있다. 따라서 이 規定은 法違反에 대한 責任을 묻고 水産関係法令에 대한 一般的予防의 効果를 目的으로 한다.

마) 相続에 의한 漁業権損失

漁業権은 相続時

① 公益上의 必要 등에 의한 漁業権損失의 경우

② 漁業을 経営할 수 없을 때

그 漁業権은 取消되는데(水産業法 第37条), ②의 경우는 漁業権을 消滅시킬 必要까지는 없으므로 行政官庁은 漁業権 移転登録을 한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相続人에게 当該漁業権을 譲渡하지 않으면 取消한다는 것을 通知하게 하고 있다.

바) 漁業権期間満了나 期間延長不許에 의한 漁業権損失

免許의 有効期間 또는 延長許可期間이 満了됨으로써 漁業権은 消滅되는데(水産業法 第14条 第4項),

① 公益上 必要나

② 免許期間이 滿了된 漁場의 일부 또는 전부가 期間滿了 前에 不実管理되었거나 生産実績이 현저히 不良하였다고 인정될 때

③ 免許가 失効되어 1年이 經過되었을 때의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免許有効期間延長申請에 대해서 延長을 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경우에 해당될 때는 漁業權의 損失을 가져온다.

2. 漁業權損失의 性格

가. 漁業權損失의 前提

漁業의 損失이란 "漁業權을 行使하는데 있어서 어떤 制約으로 그 行使가 禁止되거나 制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定義하였던 바 이러한 漁業權損失을 가져올 수 있는 者는 行政官庁이며 그 行為는 行政処分이라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行為를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前提가 必要하다.

1) 漁業權損失処分을 하는데는 法適合性을 가져야 한다. 즉 損失処分의 事由는 法規에 의거하여야 하고 그 內容도 法이 規定하고 있는 것과 一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漁業權者에게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行政処分의 內容을 通知하여 漁業權者가 그 사실을 認識하는 것을 必要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処分은 行政官庁이 스스로 그 職權에 의해서 自発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어떤 申請을 必要로 하지는 않는다.

나. 漁業權損失의 內容

이것은 일단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의 문제

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既存財産의 減少

漁業権損失에 의해서 既存財産의 減少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漁業権이라는 財産的利益이 減少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로운 費用의 支出

漁業権에 損失을 가져올 때는 새로운 費用을 支出하게 되는데, 定置漁業権이나 養殖漁業権 등에 있어서 施設物을 移転하거나 除去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이 여기에 속한다.

3) 将来期待利益의 喪失

漁業権損失에 의해서는 将来에 얻을 수 있는 利益을 상실하게 된다. 将来期待利益에는 確実한 것과 不確実한 것이 있는데, 通常的인 事情下에서는 그 期待利益의 喪失이 一般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確実한 것을 말한다.

다.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処分의 効力

일단 漁業権損失이 正当化되면 다음과 같은 効力이 발생한다. 즉 漁業権損失을 가져온 그 処分 자체에 대한 取消가 있기 前까지는 相対方인 漁業者 뿐만 아니라 第3者도 구속하는 効力을 가진다. 또한 그 処分 이후 일정한 期間이 経過한 후에는 그 行為가 無効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不可抗力이 생겨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効力을 가지는 반면, 그 処分이 違法한 것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無効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漁業者가 被害를 입었다면 漁業者에게 加害者가 被害賠償責任을 져야 한다는 限界선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

3.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

가. 損失補償의 槪念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漁業権損失은 일종의 外生的 経営危険이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漁業権損失이 発生하면 본래 漁業権을 부여받아 漁業에 종사하고 있던 漁業者(漁業権者)는 그 生計維持手段을 剥奪당하든가 制限당하게 됨으로써 既存財産이 減少하거나, 새로운 費用이 発生하면, 将来의 期待利益을 喪失하는 등의 被害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被害를 가져오는데 대하여 그것이 비록 適法한 行為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加害者는 그에 相応하는 反対給付를 提供하여야 함은 당연한 理致이며, 그 反対給付의 구체적인 형태가 補償으로 나타난다. 漁業権損失은 漁業者가 予測可能하거나 回避可能한 経営危険이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漁業者가 받는 被害는 莫大하므로 加害者側에서 補償을 해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行為를 하는데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漁業権漁業에서의 損失補償이란 크게 두가지의 意味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첫째, 国家나 地方公共団体가 漁業権損失의 加害者가 되는 경우로, 이것은 이들 国家나 地方公共団体가 公共의 必要에 의하여 行한 適法한 行政上의 公権力行使(行政処分)의 결과 그로 인해 発生한 特別한 犠牲에 대하여 私有財産権의 保障과 전체적인 公平負担의 견지에서 이를 調整하기 위하여 行하는 調節的인 財産的補填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公共의 必要에 의하여 行政上 適法行為를 하였을때 그로 인한

損失의 補償이다.

行政官庁이 公共의 必要에 의하여 그 権限을 適法하게 行使할 때 처음부터 予測한 損失에 대한 補償이다. 여기서 注意할 점은 이 경우는 適法한 行為(処分)로 인하여 漁業者가 損失을 입었을 때 補償을 해주는 것으로, 違法한 行為에 의하여 損害를 받았을 때의 損害賠償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行政上 公権力의 行使로 인한 損失의 補償이다.

따라서 이 경우 補償은 公法的 行為이며 일반적인 私法上의 契約에 의한 反対給付가 아니다.

3) 適法한 犧牲에 대한 調節的 補償이다.

適法한 行為로 公共의 必要에 의하여 漁業者에게 特別한 犧牲을 加한 까닭에 그 財産上의 特別한 犧牲을 国民全体의 負担으로 転嫁시켜 모든 国民間에 고르게 調節하여 주는 補償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個人 혹은 法人이 漁業権損失의 加害者가 되는 경우로서 이때의 損失補償은 財産이나 権利의 所有者가 補償을 条件으로 하여 그 財産 및 権利를 抛棄함으로써 받게 되는 反対給付라 할 수 있다.

나. 損失補償의 諸原則

1) 起業者補償의 原則

이는 損失의 原因者 또는 損失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利益을 받는 者가 補償을 해주어야 한다는 原則이다.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에는 国家 또는 地方公共団体가 損失을 가져오게 하는 行為者가 되어 이들 行政官庁이 補償을 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고, 埋立免許権者가 起業者로서 補償을 하여 주어야 할 경우도 있다.

2) 金銭補償의 原則

漁業権損失을 가져왔을 때, 起業者(損失加害者)가 金銭으로 그 補償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金銭이라 함은 각종 通貨를 말하며 通貨는 強制通用力이 있는 貨幣를 의미한다. 그런데 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 起業者와 損失漁民(損失者)의 合意에 의해서 定해진 補償金額을 対物로 換算하여 支給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3) 個別支払原則

補償의 方式으로서는 補償을 받을 사람이 複数일 때 補償額을 하나로 묶어 決定하여 그 複数의 補償権利者(損失漁民)끼리 나누도록 하는 代位主義와 補償額을 補償権利者의 数에 따라 個別的으로 定하는 個別主義가 있다.

現行 漁業権損失의 補償制度에서는 代位主義, 個別主義를 定하고 있지 않으나 土地収用法에서는 土地를 収用함으로써 補償을 해주어야 할 경우에 있어서 代位主義는 損失者의 権利保護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土地所有者 및 権利者別로 각각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個人別로 補償額을 算定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그 算定이 아주 곤란한 特殊한 경우에는 代位主義를 인정하고 있다(同法 第45条 第2項 参照). 따라서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個別主義에 의해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限해서만 代位主義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時価補償의 原則

이는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은 事業認定 즉 漁業免許 당시의 価格이 아닌 損失을 가져오는 処分当時의 時価에 의하여 補償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現行 補償制度에서도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額을 算

出하는데 処分日字를 기준으로 하여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原則에 의하여 補償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 完全補償의 原則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行政処分으로 인해서 漁業者가 받는 損失은 不平等한 負担으로서 「特別한 犧牲」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損失에 대하여는 이를 完全補償함으로써 損失前後에 있어서 全体的인 財産의 減少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行制度에 있어서는 이 原則에 입각하여 補償이 되지 않고 있다. 즉 水産業法施行令 第72条 第1項 第1号 ㉮의 경우 80%만 인정하는 것이 그 例이다.

다. 漁業権의 損失과 그 補償의 妥当性問題

앞에서 公益上 必要할 때, 漁業権者가 그의 漁業権抛棄에 同意할 때, 기타 몇가지의 경우에 漁業의 損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損失漁民들은 補償을 請求할 수 있을까?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경우란 몇가지로 限定된다. 以下에서는 앞에서 든 여러가지의 漁業権損失原因을 중심으로 하여 그 補償의 妥当性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補償을 받을 수 있는 漁業権損失

現行 補償制度上 漁業権損失을 입었을 때, 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関聯事項은 주로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漁業者가 스스로 漁業権의 抛棄에 同意한 경우의 그 損失補償에 대한 関聯事項은 公有水面埋立法 및 同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다.

가) 水産業法上의 補償対象事由

① 水産業法 第20条 第1項 第1号 내지 3号의 規定, 즉 公

益上의 必要에 의한 漁業의 制限등의 경우에 의한 損失処分이 있었을때[13]

② 漁業調整 其他 必要한 때 漁業監督公務員이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測量檢査하거나 이에 妨害가 되는 物件을 移転 또는 除去시켰을 때(同法 第57条)

③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해 損失処分을 하였을 때(同法 第69条 第2項)[14]

위의 세 경우에 대해서는 損失加害者의 補償이 있어야 하는데 漁業権損失에 関係있는 것은 ①, ③의 두 경우이다.

나) 公有水面埋立法上의 補償対象事由

公有水面埋立法 第5条에 의한 경우[15] 補償을 損失漁民은 받을 수 있다.

2) 補償을 받을 수 없는 漁業権損失

가) 免許를 받은 者 이외의 者가 漁業을 支配할 때

나) 事前申告없이 1年 이상 休業을 할 때

다) 漁業者가 免許를 받은 후 1年이상 漁場을 遊休状態로 放置하였을 때

라) 行政官庁의 錯誤로 인해 免許를 받았을 때

마) 漁業者가 関係法令을 違反했을 때

바) 相続에 의한 漁業権消滅時

사) 免許期間延長을 不許할 때

등으로 이때는 損失漁民들은 補償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가), 나), 다), 마)의 경우는 漁業者 자신의 帰責事由에 해당하므로 補償을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나 라)와 바) 및 사)의 規定中 公益上의 必要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設置한 施設物이 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売却処分損失額(施設物 残存価額과 施設物売却収入額의 差額)만큼의 補償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註 13) 자세한 規定은 Ⅱ의 나의 나) 参照.
註 14) 자세한 規定은 Ⅱ의 나의 나) 参照.
註 15) Ⅱ의 나의 2) 参照.

Ⅳ. 損失(評価)의 算定

1. 損失額算定의 基礎

漁業権損失을 가져오는 行為에 대한 妥当性이 인정되고 또 그것이 被害者인 漁業者가 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事由가 될 때는 이후 가장 중요한 問題가 補償金額(혹은 損失金額)을 정확하게 算出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補償金額을 損失金額과 一致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正確한 補償金額을 算出하는 데에는 物権, 財産権 및 無形固定資産의 性格을 가지는 漁業権과 그 施設物에 대해[16] 鑑定과 評価라는 一連의 行為가 必要하다.[17] 즉 漁業権과 그 施設物의 価値에 관한 諸要因을 分析, 判断하는 機能인 鑑定의 過程을 거쳐 그의 所有権 기타 権利와 利益의 経済価値를 評定하여 貨幣額으로 表示하는 評価라는 行為에 의하여 漁業権損失에 대한 補償額을 算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鑑定行為는 漁業権의 価値를 評価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要因(이것은 評価方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의 真偽 및 適合, 不適合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에서 이들 要因을 비교적 상세하게 規定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漁業権損失의 評価에는 그리 큰 意義를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損失補償金額은 評価라는 行為에 의해 算定된다.

註 16) 漁業権漁業의 損失額評価는 실지로는 漁業権의 評価額과 그 施設物의 評価額을 合한 것을 말한다.

註 17) 鑑定과 評価를 同一하게 보는 一元説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両者를 구별해야 한다는 二元説을 取하고 있다.

이러한 評価制度가 반드시 必要한 이유는 漁業権의 자유로운 売買가 원칙적으로 禁止되고 그 去来事例도 많지 않았던 관계로 万人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価格이 자연적으로 形成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価格決定에도 専門知識을 要하는 点이 많으므로 適正한 価格評定을 위해서는 職能의 専門化가 必要할뿐 아니라, 漁業権 자체가 高度의 社会性, 公共性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2. 損失額算定의 諸方法

漁業의 損失額 내지 補償額을 算定하는 方法으로서는 一般的인 方法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原価法

이것은 価格의 費用性 즉 어느 정도의 費用이 投入되어 만들어진 것인가에 따라 再調達(혹은 再取得)에 소요되는 原価에 착안하여 그 価格을 損失(補償)金額으로 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의 基本原理는 C - D = P 이다.

C … 価格時点의 再調達(再取得)原価

D … 減価額

P … 原価法에 의하여 구하는 損失金額

이 方法에서는 C와 D가 P를 정확하게 算定하기 위한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正確度 여부에 따라 評価額 P의 正確度가 좌우된다.

1) 再調達原価

再調達原価는 漁業権損失을 가져오기 前에 存在하던 漁業権漁業을 価格時点(処分時点)에 있어서 再調達하는 것을 想定한 경우 그에 必要한 適正原価의 総額을 말한다. 이를 구하는 方法으로는 直接法과 間接

法이 있는데, 前者는 漁業權 및 그 施設物을 再調達하는데 소요되는 直接, 間接費를 合하는 方法이고 後者는 隣近漁場의 그것에 準하여 決定하는 方法이다.

가) 漁業權漁業의 再調達原価

漁業權漁業의 再調達原価는 漁業權의 再調達原価만을 말하는 경우와 施設物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分離하여 보기로 한다.

漁業權의 再調達原価가 그 漁業의 免許를 받는데 所要된 費用만을 말한다면 金額으로 免許手数料에 해당하는 400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18]

한편 施設物에 대한 再調達原価는 위에서 말한 直接法, 間接法 등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漁業權의 取得価額 400원과 施設物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諸費用만을 投入하며 漁業을 行하였고 그 漁業權에 어떤 損失을 가져왔을 때 漁業權의 再調達原価 400원에 대한 C－D＝P의 価額과 施設物의 再調達原価에 대한 C－D＝P의 価額을 合한 金額을 正当한 損失(補償)金額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施設物에 대해서는 金額算定에 어떤 하자가 없는 限 그 正当性을 인정할 수 있으나 漁業權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즉 400원이라는 金額을 진정한 의미의 漁業權의 再調達原価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漁業權이 法으로부터 부여받은 權利에 대한 経済的 利益의 評価가 反映되지 않는 非現実的인 評価이기 때문이다. 漁業權은 無形固定資産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漁業權의 再調達原価가 400원이라는 것은 漁業權을 有形資産과 같은 立場에서 본 結果이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註18) 水産業에 関한 手数料規則 第2条의 2 参照

나) 漁業權의 再調達原価의 算定

일반적으로 再調達原価는 再取得価額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漁業権도 자유로운 売買가 가능하고 去来事例가 많을 때는 그 売買価格으로 再調達原価로 할 수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現行制度上에서는 그 売買価格으로 再調達原価를 대신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면 漁業権의 特性을 고려하여 漁業権을 評価하는 方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는 漁業의 免許를 받을 때 所要되는 手数料 이외에 営業権으로서의 漁業権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営業権이란 同種의 他業者에 비하여 超過収益을 올리고 있을 때 그와 같은 超過収益을 現在価値로 還元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超過収益額은 이를 立証할 수 있는 客観的 事実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会計学的인 通説로서는 이 것을 他人으로부터 有償으로 取得했을 때만 인정한다고 한다. 漁業権도 이러한 営業権으로서의 属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営業権은 同種 他業者에 비해 超過収益을 가져오는 原因이 되고 그 超過収益은 通説的으로 営業権을 有償으로 取得했을 때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漁業権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免許登録이라는 事実만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免許登録을 함으로써 漁業権이 取得되고 이 漁業権을 가짐으로써 漁業権을 갖지 못한 他漁業者에 대해 一定海域에서의 操業을 排斥할 수 있는데 이러한 行為는 결과적으로 漁業権者들이 漁業権을 갖지 않는 者에 비해서 超過収益을 올리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漁業権은 일종의 営業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評価에 있어서도 再調達原価를 免許手数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営業権으로서의 漁業権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明白해진다. (이

때 営業権으로서의 漁業権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営業権을 評価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年金法, 資本還元法, 年数買入法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年数買入法에 의한 漁業権損失補償金額의 算定過程을 보기로 한다.

이 方法은 年買法 또는 年数倍法이라고도 하는데 과거 数年間의 平均漁獲高와 平均純利益에 一定年数를 곱하여 그 金額을 漁業権評価金額으로 보는 方法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漁獲高年数買入法

(年平均漁獲高) × (一定年数) = 漁業権価値

② 純利益年数買入法

(年平均純利益) × (一定年数) = 漁業権価値

이 方法을 適用하는데 平均漁獲高, 平均純利益 및 一定年数가 가장 중요한 要素가 된다. 平均漁獲高와 平均純利益을 決定하는 데는 過去 몇 年間 (現行 制度에서는 3年間) 의 平均値를 구하면 되겠으나[19] 一定年数를 決定하는 데는 매우 어렵다.

엄밀하게는 漁業別, 海域別로 資源의 存在量, 採捕 (採取) 可能年数 등을 推定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이나, 法에서 漁業権種類別로 그 有効期間을 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다. 이 年数(期間) 問題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2) 減価額算定

減価額을 減価計算에 의하여 구한다.

註 19) 現行制度下에서 平均漁獲高와 平均純利益을 구하는 데도 많은 問題点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減価計算이 필요한 이유는 対象漁業権의 処分時点에 있어서 試算価格을 適正化하기 위함이다. 한편 減価計算을 하는 方法은 耐用年数에 의한 方法과 観察減価法이 있다.

가) 耐用年数에 의한 方法

(1) 減価額算定의 基礎

耐用年数에 의하여 減価額을 구하는 方法에는 定額法, 定率法, 償還基金法, 比例法, 年数合計法, 廃棄 및 更新法 등이 있다. 그런데 이 中에서 漁業権의 減価額을 구하는 方法으로서는 定額法이 가장 妥当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漁業権은 일종의 無形固定資産으로서 営業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有形資産과 같이 物理的으로 価値가 減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時間의 経過에 따라 消滅해가는 것이므로 有形資産의 그것과는 減価形態가 相異하기 때문이다. 보통 無形固定資産의 耐用年数는 法律에 의해 有効期間으로 定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期間에 걸쳐 年別로 均等償却을 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의 現行税法에도 無形固定資産의 減価計算은 定額法에 의해서만 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漁業権을 定額法에 의하여 減価計算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定額法에 의한 減価額算定은 漁業権 자체에 대해서만 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施設物까지 포함하여 定額法으로 算定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施設物에 대한 減価額算定에도 定額法을 이용할 수 있으나 現行税法에서 원칙적으로 有形固定資産은 定率法에 의해 減価計算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로 이 方法에 의한 有形固定資算의 評価가 많이 行해지고 있으므로 原価法에 의하여 損失補償額을 구하기 위하여 減価償却을 할 때는 施設物에 대한 減価計算은 定率法에 따라 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2) 定額法에 의한 漁業權의 評価

定額法은 減価額을 단순히 耐用年数로 平分한 것을 毎年의 償却額으로 하는 方法으로서 価値減少가 순전히 期間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減価累計額이 経過年数에 비례하기 때문에 直線法 또는 均等償却法이라고도 한다. 이 方法에 의한 減価額의 일반적인 計算方式은

$$D = \frac{C - S}{n}$$ 이다.

D …期間償却額
C …減価基礎価額 (再調達原価, 再取得原価)
S …残存価額
n …耐用年数

여기서 減価基礎価額이란 앞에서 말한 再調達原価를 말하며, 残存価額은 耐用年数가 끝난 時点에서의 残存価値를 화폐액으로 表示한 것을 말한다. 通常的으로 無形固定資産의 残存価値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営業権으로서의 漁業権의 毎年의 減価額을 $D = \frac{S}{n}$ 로 나타낼 수 있다.

耐用年数는 原価法을 사용하여 損失額을 算定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要素의 하나이다. 漁業権의 有効期間은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에서 定하고 있는데 水産業法 第14条 第1項에 의하면 漁業権의 有効期間은 5年내지 10年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同施行令 第14条의 10에 의하면 養殖漁業権中 살포식, 투석식, 축제식은 10年, 건흥식, 수화식 및 축양은 7年, 定置漁業権은 10年, 건흥식, 수하식 및 축양은 7年, 定置漁業権은 10年, 第1種 共同漁業権은 10年, 第2種 및 第3種 共同漁業権은 5年으로 定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의 免許期間延長을 不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0] 漁業権의 有効期間을 半永久的이라 할 수 있다.

註20) Ⅱ-1의 3)의 바 参照

그러나 免許期間延長을 不許하는 경우 中에서 公益上 必要에 의한 漁業의 制限 등의 경우는(水産業法 第20条 第1項 第1号 내지 3号의 規定) 漁業權의 有效期間이 延長되지 않으므로 有效期間은 法에서 定하고 있는 바대로 確定된다. 따라서 이 原因으로 인한 漁業權損失의 損失額算定은 定額法에 의하여도 별 문제가 없으나 漁業者가 스스로 漁業權抛棄에 同意하여 他人이 埋立工事를 하게될 때 그로 인한 漁業損失額을 算定할 경우에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 즉, 原価法에 의하여 損失額을 算定하고자 하여 減価計算을 할 때 漁業權의 期間을 어떻게 定하느냐에 따라 損失加害者와 損失漁民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는 漁業損失에 대한 損失額決定方式이 定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서 실제로 損失加害者인 埋立者와 被害者인 損失漁民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로 미루어 볼때 現制度下에서는 埋立으로 인한 漁業權損失額을 算定하기 위하여 原価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漁業權을 営業權으로 보고 原価法에 의하여 耐用年数를 사용하여 減価額을 구하는 方法을 보았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그 施設物에 대한 減価額算定도 損失(補償)額算定이 중요한 部分인데, 이는 定率法에 의하여 算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算定方式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 觀察減価法

이 方法은 全体에 대한 減価要因과 減価額을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상태가 세밀하게 관찰되어 減価額算定에 반영된다는 長点을 가지나 評価主体의 個別的 能力이나 主觀에 좌우되기 쉽고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하자를 놓치기 쉽다는 短点도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漁業權은 시간의 経過에 따라 減価가 진행

되므로 이 方法을 全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은 희박하다고 하겠으나 施設物의 減価額算定에는 耐用年数에 의한 方法과 併行하여 사용할 수 있는 方法이다.

나. 比較法

이것은 多数의 去来事例를 蒐集하여 적절한 事例를 선택한 다음, 必要에 따라서 事情補正 및 時点補正을 加하고 다시 地域要因과 個別的 諸要因을 비교해서 구해진 価格을 比較考察함으로써 試算価格을 구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去来事例의 蒐集에 制約을 받으므로 이 方法만으로 損失額을 算定하기는 거의 不可能하다. 다만 다른 어떤 方法(例; 原価法)을 사용하여 損失額을 算定한 후에, 隣近漁場이라는 位置의 類似性과 同一漁業権이고 그 施設規模가 근사하여, 施設物에 대한 기타의 諸般事項이 비슷하다는 物的類似性을 인정할 수 있을 때, 原価法이나 還元法 등에 의하여 구한 金額의 適正性 여부를 検証하는 데는 有力한 一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還元法

이것은 「期待純収益」을 処理하여 純収益을 産出하는 投下資本의 総和를 評定하는 評価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래 算出될 것으로 기대되는 純収益에 대한 現価의 総和를 구하는 것으로, 純収益을 還元利率로 還元하여 損失漁業権의 현재의 試算価格을 구하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의 信頼度 내지 正確度는

① 期待純収益에 대한 推算의 合理化

② 資本還元率

③ 還元方法 등에 의존하는데 이들 純収益, 還元利率, 還元方法을 「還

元法의 3要素」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漁業權損失의 補償을 위하여 漁業을 評価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 方法은 장래에 純收益을 資本還元하면 그 現在価値가 구해진다는 論理에 입각한다. 즉 資本에는 利潤을 창조하는 힘이 있으며, 同一한 화폐액으로 表示되는 金額도 현재의 価値와 미래의 価値는 같을 수 없다는데 理論의 根拠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漁業을 行함으로써 向後 n年間 1年째 收益을 a_1, 2年째 收益을 a_2, …n年째 收益을 a_n 이라고 하고, 利率을 r 이라고 할 때, 現在 価値의 総合計는

$$P_n = \frac{a_1}{(1+r)} + \frac{a_2}{(1+r)^2} + \frac{a_3}{(1+r)^3} + \cdots + \frac{a_n}{(1+r)^n}$$

$$= \frac{a\{(1+r)^n-1\}}{r(1+r)^n}$$ 이라는 等比級数로 表示되며 특히 期間 n이 無限이라면 $$Pn = \frac{\lim}{n\to\infty} \frac{a}{r}\{1-\frac{1}{(1+r)^n}\} \fallingdotseq \frac{a}{r}$$

된다. 그런데 이때 純收益을 가져오는 源泉은 法에 의해 부여된 権利인 漁業権과 실제로 漁撈行為를 하는데 필요한 施設物을 合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方法에 의하여 算定한 評価額은 漁業権과 그 施設物을 合한 것에 대한 評価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方法을 適用하는데 있어서는

① 收益의 発生이 없는 対象의 評価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② 純收益과 還元利率을 適正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③ 收益에만 主眼点을 두는 관계로 收益의 차이가 없는 対象의 新旧에 따른 評価額은 차이가 없다는 短点을 내포하고 있다. 特히 漁業権의 評価에 있어서는 漁場別로 그 收益의 차이가 있으므로 外形的으로는 같은 漁業権, 같은 施設物에 대해서도 그 評価額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点이 큰 問題点으로 나타난다.

1) 純收益

純收益은 漁業을 行함으로써 算出되는 總收益에서 그 收益을 올리는데 소요되는 總費用을 控除한 것을 말하는데 年間単位로 算定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漁業의 評価는 그의 正常的인 価値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妥当性, 客観性을 가져야 한다. 즉 收益은

① 漁業에 있어 그 施設物의 보통, 일반적인 利用으로 인하여 (이는 免許 받은 漁具漁法을 사용하여 操業함을 말한다.) 算出되는 것이라야 하며

② 継続的, 規制的으로 発生하는 것이라야 하며

③ 安全하고 確実한 것이라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客観性이 인정되는 純收益算定을 위해서 現行 補償制度에서는 3年間의 平均漁獲量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純收益을 계산하기 위한 基礎資料에 있어서도 客観性을 인정하는 範囲를 定할 것이 必要하다.

2) 還元利率

還元法을 사용하여 漁業을 評価하는데 있어서는 正確한 純收益의 算定 못지 않게 正確한 還元利率을 定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收益性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利率」이 있는데 이것은 純收益의 本来의 資産価値(元本価格)에 대한 比率로 表示된다. 따라서 이 利率과 純收益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純收益을 利率로 還元하여 元本価格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利率이 「還元利率」이다.
보통 還元利率은 純粋利率과 危険負担割増金의 複合利率이다. 이때 純粋利率이란 모든 投資活動에 適用되는 一律的인 크기의 利率을 말하는데, 投資로서 가장 安定的인 国債, 地方債, 金融債 등의 有価証券의 利率

에 기초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危險負担割增金은 投資活動에 수반되는 危險性과 非流動性 기타 管理의 곤란, 資金의 安定性 등을 커버하기 위한 余分을 말한다. 現行 補償制度에서는 還元利率로서 銀行一般貸出利率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한 純粹利率에다 危險負担割增金을 포함한 槪念이라고 할 수 있다.

3) 純收益을 還元하는 方法

還元法에 의하여 損失額을 算定하기 위하여 漁業을 評価하는 데는 漁業權 및 그 施設物을 포함하여 評価하게 되며 評価方法으로는 여러가지 있으나 그 適用上 많은 技術的인 難点이 있으며 비교적 適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直接 還元法이다. 이 方法은 純收益이 永続的이라는 前提下에 純收益을 還元利率로 收益還元하여 그 收益価格을 定하는 方法이다. 즉 施設物을 포함한 全体漁業의 評価額을 p, 純收益을 a, 還元利率을 r 이라고 하면 $P=\frac{a}{r}$ 이다. 이 方法은 土地와 같이 純收益이 永続的인 경우에 있어 그 価値를 評価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漁業權漁業의 경우에서도 이 方法을 사용하여 그 価値評価(損失額評価)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漁場을 스스로 再生産力을 가지고 있어 永続的인 收益을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이 漁業權漁業의 有効期間도 特別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半永久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現行 補償制度에서는 還元法 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直接還元法을 사용하여 損失額을 算定하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方法에 의해 算出할 価額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일정한 比率만큼을 補償(損失)額으로 인정한다는 点과 施設物의 残存価額과 施設物売却收入額의 差額인 売却処分損益까지 고려한다는 点이다.

Ⅴ.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와 그 問題点 및 改善方案

1.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事由가 発生하고, 그것이 補償의 対象이 될 때는, 被害者인 損失漁民은 그가 입은 損失에 대응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補償을 請求한다. 이러한 補償의 節次는 補償金의 請求, 補償金의 算定이라는 過程을 거쳐 加害者가 支給하는 補償金을 損失漁民이 受領함으로써 一段落된다.

現行 補償制度에 있어서는 公益上 必要나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해서 漁業權損失을 가져오는 경우와 埋立工事 등에 同意하여 漁業權의 損失을 가져올 때의 補償節次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公益上必要나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한 漁業權損失의 補償

1) 補償金의 請求

公益上 必要에 의한 漁業의 制限 등에 의하여 漁業權損失을 가져왔을 때에는 그 処分이 있은 날로부터,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하여 除害工事를 했을 때는 그 除害工事가 완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免許 또는 許可番号와 施設物撤去 義務免除者의 住所 및 姓名

②処分事項과 그 日字

③損害의 内容

④損害額과 그 内訳 및 算出方法(証憑書類 첨부) 등을 기재한 請求書를 市長, 郡守 및 道知事를 거쳐 水産庁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地方公共団体의 必要에 의하여 処分을 한 때에는 市長, 郡守를

거쳐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水産業法施行令 第71条 參照)

2) 損失額의 算出

漁業의 損失(害)額을 算出하는 데는 処分日字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가) 公益上 必要에 의한 漁業의 制限 등(水産業法 第 20条 第1項 第1号 乃至 第3号)의 規定에 의한 取消의 경우

(1) 施設後 収穫이 있는 경우

平年収益額 ÷ 年利 × 0.8 + 施設物残存価額 - 施設物売却収入額

(2) 施設後 収穫이 없는 경우

将来 期待되는 平年収益額 ÷ 年利 × 0.5 + 施設物残存価額 - 施設物売却収入額

(3) 漁業権을 取得하여 施設을 하지 아니한 경우

漁業権取得価額

나) 公益上必要에 의한 漁業権의 取消 및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한 除害工事, 施設物 除去의 경우

平年収益額에 의한 制限, 停止 등 期間中의 推算収益額 × 0.8 + 移転, 収去 등에 소요한 実損額

이 경우 "平年収益額"이라 함은 平年間漁獲量을 処分 当時의 時価로 換算한 金額에서 平年漁業 経費를 控除한 金額을, "漁業経費"라 함은 各種 税金, 販売手数料, 人件費, 漁船, 漁具補修費, 燃料費, 食糧費, 魚箱子代 등의 経費를 말한다. 한편 이때의 "平均年間漁獲量"이라 함은 3年이상의 実績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年間의 平均漁獲量, 그렇지 못한 경우는 隣近漁場의 比率에 의하여 다음 算式에 따라 算出한 推定平均漁獲量을 말한다.

$$\frac{\text{当該漁場의 実績期間中의 漁獲量}}{\text{隣近漁場의 当該実績期間中의 漁獲量}} \times \frac{\text{隣近漁場(通常 2個所)의 3年間平均漁獲量}}{\text{隣近漁場의 当該実績期間中의 漁獲量}}$$

年利는 銀行一般貸出利率을 適用하며, 施設物에 대한 価額은 基準年度의 銀行評価額에 의한다.

한편 証憑書類에 의해 위의 算式을 사용하여 損失額을 算定할 수 없을 때는 当該漁場에 대한 信憑性 있는 資料 또는 隣近에 있는 同種漁業의 生産実績 등을 참작하여 推算한 平均年間収益額을 기초로 하여 算定할 수도 있다.

3) 補償金의 決定과 通知

補償金 또는 負担金을 決定하려고 할 때는 水産庁長 또는 道知事는 미리 当該水産調整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①漁業権에 관하여 등록된 権利者의 住所와 姓名

②漁業의 表示

③処分日字

④補償金額(負担金額)을 関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同施行令 第 33条 第1項)

그러나 이때의 補償金額은 損失漁民들이 請求한 金額을 전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개가 請求金額에 미달하여 흔히 분쟁요인이 된다. 그리하여 水産調整委員会에서 決定한 補償金額에 不服하는 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 以内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으며 水産庁長 또는 道知事가 이 申請을 받은 때에는 3개월 以内에 決定하여 申請者에게 通知한다. (同施行令 第73条 第2項 및 第3項)

4) 補償金의 支給

補償金은 그 金額의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2年 以内에 当該 処分行

政官庁(다른 行政官庁의 요청에 의하여 処分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行政官庁)이 이를 支給한다。(同施行令 第 74 条)

나. 埋立 등의 工事에 의한 漁業権損失의 補償

이 原因에 의해 漁業権損失을 가져올 경우 加害者는 미리 補償을 받을 者와 補償에 관해 協議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어(公有水面埋立法 第 16 条 第 2項 参照) 事前補償原則을 取하고 있는 것이 앞의 가의 경우와 다른 点이다。 그리고 위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하지 않거나 協議할 수 없을 경우에는 地方土地収用委員会와 中央土地収用委員会에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同法 第 16 条 및 同施行令 第 26 条)

한편 協議가 成立되었을 때에는 当事者가 連名으로 協議가 成立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전말을 免許官庁에 申告하여야 한다.(同施行令 第 25 条)。 기타 埋立으로 인하여 이미 設置한 施設物을 利用할 수 없거나, 다른 損失이 発生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補償을 해주어야 한다(同施行令 第 27 条).

埋立으로 인하여 漁業権 損失을 가져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補償 節次나 補償金額支給 등을 規定하고 있지 않다。 이는 勿論 個人 사이의 問題이니 만큼 이러한 事項을 法으로 明示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한쪽은 社会的, 経済的으로 弱者이므로 同等한 地位에서 協議가 進行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協議過程에서 予測되는 不均衡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法規定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現行 漁業権損失補償制度에 관한 일반적인 事項을 두 경우로 大別하여 살펴보았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現行 制度에서는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協議前置主義의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協議가 成立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各道나 中央에 水産調整委員会 및 土地収用委員会

를 두어 이의 裁定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補償의 問題에 있어서는 이러한 制度 이외에도 損失을 입은 者가 行政訴訟이나 民事訴訟을 提起하여 그에 의하여 補償問題를 해결할 수도 있음은 勿論이다.

2. 現行 漁業權損失補償制度의 問題点 및 改善方案

가. 몇개의 事例

1) 対象漁業権 ; 慶北 미역養殖 1060 호

가) 免許取消日字 ; '75. 10. 31

나) 取消의 原因

軍事上必要에 의하여 軍当局의 요청에 따라 水産業法 第20 条 第1項 第2号 規定에 의거, 養殖漁業権이 取消됨.

다) 免許取消機関 ; 迎日郡守

라) 免許取消要請機関

(1) 国防部 - 水産庁 - 慶北道 - 迎日郡

(2) 現地 部隊長이 補償金 負担条件으로 迎日郡守에게 当該 漁業権의 取消要請

마) 補償請求額 現況

(1) 補償請求額 ; 17,425,202 원

(2) 慶北道査定額 ; 4,076,903 원

(3) 中央水産調整委員会 決定額 ; 4,076,903 원

(4) 異議申請額 ; 47,863,181 원

바) 異議申請人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 3 리

○ ○ ○

사) 損害額의 內容

〈表 - 9 〉 參 照

〈表 - 9 〉 損害額의 內容

区 分	請 求 額	慶北道 調整額	水産庁 確定額	異 議 申請額	異議申請 検討案
計	17,425,202	4,076,903	4,076,903	47,863,181	12,987,700
施設費	1,200,000	1,200,000	1,200,000	10,382,753	1,200,000
経営費	16,225,202	2,876,903	2,876,903	37,480,428	11,787,700

아) 補償金額의 決定

附録 案을 中央水産調整委員会에 상정, 審議, 決定에 따라 補償金 支給義務를 지워 国防部長官 및 慶北道에 通報

자) 異議申請額과 査定損害額에 차이가 발생한 事由

①미역의 単位当 生産量을 請求者는 5.5 kg 으로 申請하였으나, 検査機関은 4 kg로 査定하여 収入額 減少

②施設内訳에 있어서 請求者는 四角延縄式에 의한 施設費를 請求하였으나 検査機関에서는 四角延縄式에 의한 養式方法임은 부분적으로 認定하나 実需要量을 確認할 수 없으므로 당초 포항水協의 施設鑑定을 適用

③請求者의 漁業経営資料上의 減価償却費를, 検査機関에서는 당초 慶北度 漁業経営資料를 근거로 하여 2중 계산된 漁具減価償却費(種糸代 제외)와 採収賃(乾燥賃)을 제외하여 計算, 査定함.

④請求者는 kg当 価格을 57원으로 申請하였으나 迎日郡 水協管内에서는 생미역 委販実績이 없어 '75 水産物委託販売実績(水協) 및 慶北道의 補償対象者会議時 결정된 調整, 合意된 30원을 기준으로 査定함.

⑤人件費에 대하여는 請求者의 証憑할 수 있는 関係資料가 없으므로 年度別 政府労賃 単価를 기준으로 査定함.

2) 対象漁業権 ; 慶北定置 1332号

가) 免許取消日字 ; '77. 1. 7

나) 取消의 原因

海軍의 上陸作戦訓練計画上 支障이 있는 漁業権을 国防部의 요청에 의거, 取消함으로써 損失発生

다) 免許取消機関

慶北道

라) 免許取消要請機関

国防部 - 慶北道

마) 補償請求額의 内容

別表 参照

〈表 - 10〉 補償請求額 및 損害額算出額

区分 / 内訳別	請求	道検査	最終調整(案)
漁獲実績	90,420 kg	84,048 kg	67,721 kg
漁獲収益	47,213,755 원	30,492,700 원	13,940,151 kg
経営費	3,774,036	5,942,956	10,980,746
施設物評価	40,306,165	40,306,165	33,516,903
施設物販売	8,000,000	8,000,000	8,000,000
貸出年利	15.5 %	18 %	18 %
損害額	256,511,161	141,416,129	38,669,813

바) 補償請求額과 損害額差異에 대한 事由(中央水産調整委員会 意見의 要約)

①委販実績証明資料 不充分

②漁業経費過少計上

③漁獲物의 単価適用의 不合理

④残存施設物評価鑑定의 不誠実

⑤市中貸出金利 잘못 適用

사) 慶北度와 中央水産調整委員会의 検査 및 調整意見

検 査 要 略

区 分	請 求 者	道検査(案)	調 整(案)	調 査 事 由
漁獲実績	90,420kg	84,048kg	67,721kg	◦個人間 去来된 実績認定 困難 ◦漁協委販実績証明分만 認定
漁獲物時価	12個月中 最高時価適用	76年平均	浦項水協 76年平均	◦年 平均
漁獲収益	원 47,213,755	원 30,492,700	원 13,940,151	◦検査時 個人証明書 根拠로 実績 認定하였으나 根拠없는 証明은 不認
経営費	원 3,773,036	원 5,942,956	원 10,980,746	◦請求者 道検査 資料의 根拠不足 ◦過去 公的으로 調査된 資料利用

区 分	請求者	道檢査(案)	調整(案)	調整事由
残存施設物評価	원 40,306,165	원 40,306,165	원 33,516,903	○檢査한 漁場規模, 水深이 漁業權臺本 海図上 資料와 差異가 있어 調整
施設物販売	8,000,000	8,000,000	8,000,000	
貸出年利	15.5 %	18 %	18 %	
損害額	256,511,161	141,416,129	38,669,813	

13,940,151 - 10,980,746 ÷ 0.18 × 0.8 + 33,516,903 - 8,000,000

= 2,959,405 ÷ 0.18 × 0.8 + 25,516,903

= 13,152,910 + 25,516,903

= 38,669,813

나. 補償金 算定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要素의 統一性 問題

1) 漁獲量의 決定

損失(補償)金 算定公式에서 기준이 되는 要素의 하나로 平年収益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平均年間漁獲量을 処分 当時의 時価로 換算한 金額에서 平均漁業 経費를 控除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平均漁獲量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対한 구체적인 規定이 없으므로 실제로 漁業權損失이 発生하여 損失漁民이 補償을 請求하면서 그 損失額을 提示할 때 適用한 漁獲量을 둘러싸고 加害者인 補償義務者와 損失 漁民들 사이에 일단 마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물론 이때 漁獲量을 確認할

수 있는 委販資料 등이 있으면 이것은 그 根拠資料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 漁業者가 軍納 등 特定人에게 納品하였을 경우 이를 証明할 수 있는 資料 또는 漁獲物을 中間商人에게 販売하였을 때는 그 販売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 등도 그 客観性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이에 의한 販売量도 漁獲量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過去의 많은 補償事例에 의하여 損失 漁民들의 漁獲量을 漁村契長이 確認하여 그것으로써 損失(補償)額算定에 사용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加害者가 이를 인정해 줄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약 全量의 인정을 거부할 때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平年収益額을 決定하는 하나의 要素로서의 漁獲量을 決定하고, 그것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普遍妥当性을 갖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나타내는 合理的인 資料를 確定 規定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漁獲物의 販売経路가 単一化되어 있지 않고 多様化 되어 있다면 漁獲量의 認定 規定의 범위 내에서 販売処別로 合算하는 方法으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現行 補償制度에서 "平均年間漁獲量"이라고 포괄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条項을 漁獲量으로 인정할 수 있는 資料源으로써 確定規定으로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①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水協이나 漁協을 통하여 委販하였을 때는 委販実績資料, 私売買에 의한 경우는 売者와 買者 쌍방의 客観性을 인정할 수 있는 資料(이에는 当事者들의 帳簿 記録 및 伝票記録과 納税資料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등에 대해서는 漁獲量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 販売量을 全漁獲으로 代替해서는 아니 되며 自家消費量까지 合한 것을 全漁獲量으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平均年間漁獲量 = 平均年間販売量(輸出量 包含) + 平均年間自家消費量이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自家消費量을 測定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몇 년간의 우리 나라 国民 1人当 当該漁獲物의 標準消費量을 구하여 그에다 家族数를 곱하여 計算할 수 있다。[21]

②漁業者가 水産庁長이나 道知事에게 報告하는 漁獲量으로써 定할 수도 있다。 즉 水産業法 第 72 条를 보면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그 漁業의 操業動態, 漁業実績 또는 販売実績을 水産庁長 또는 道知事에 報告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報告 漁獲実績을 平年収入額의 決定을 위한 漁獲量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漁獲量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問題는 한사람의 漁業者가 여러개의 漁業権을 가지고 여러 漁場에서 生産한 同種의 漁獲物을 同時에 하나의 販売経路를 통해 販売할 경우, 어느 한 漁業権이 損失을 가져왔을 때 그에 대한 漁獲量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事例를 보면, 몇개의 漁場에서 生産한 総漁獲量(或은 生産量)에서 그 漁場의 数(漁業権의 数)로 나누어 総漁獲量을 等分하여 인정한 例가 있었던 바 이것은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 몇개의 漁場에서 生産한 総漁獲量이 把握된다면 各 漁場別로 収益性, 面積을 고려한 方法으로 漁獲量을 決定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方法을 실제로 適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漁場別 収益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定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註 21 : 自家消費量은 우리나라 食品需給表의 1人 1年間 標準消費量을 参考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경우는 隣近他漁場의 收益性을 參考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漁獲物価格의 適用

平年收益額을 決定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要素가 漁獲物의 価格이다.

漁獲物의 価格을 適用하는데 있어서도 漁獲量決定과 마찬가지로 委販実績資料 및 기타의 客觀性이 있는 証憑資料에 그 価格이 나타나 있을 때는 이를 適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때에도 問題가 되는 것은 그 価格을 証明할 수 있는 証憑資料를 갖지 못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適用 可能한 漁獲物 価格에 대한 優先順位를 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第1順位로는 隣近 몇 개의 水協이나 漁協의 同種 漁獲物 委販価格을 処分 当時의 時価로 換算한 金額, 第2 順位로 水産庁, 農水産部 外 기타 信頼할 수 있는 機関에서 発表하는 同種 漁獲物의 魚価 등을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

漁獲物에 대한 価格適用과 관련하여 중요한 問題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時価로 換算하는 問題이다. 平均年間 漁獲金額을 処分 当時의 時価로 換算하는 데는 어떤 指標가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가지고 예상되는 漁獲物의 価格変動을 調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現行 制度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平均 年間 漁獲量을 定하는 데에는 최근 3年間의 平均値를 適用하는데, 물론 이 때에는 漁獲物의 価格도 処分時点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年間의 価格을 換算하기 위하여 前年의 漁獲物 価格을 어떤 指標를 사용하여 Deflate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指標로는 物価指数, 水産食品価格 上昇率 등이 있다.

①物価指数는 諸商品価格変動의 綜合的인 指標라 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国内貨幣의 購買力을 反映할 만큼 一般性을 갖

는 一般物価指数가 있다.

②水産食品 価格変動을 나타내는 指標는 現在 韓国銀行에서 発表하는 「都売物価 및 物価総覧」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漁獲物을 時価로 換算하는 方法을 例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例] 1. 漁業権 取消日 …… 1979年 3月

2. 基礎事項

① a. 1976年 A水産物漁獲量 2,000 kg
kg当 単価 200 원
b. 1977年 漁獲量 2,500 kg
kg当 単価 220 원
c. 1978年 漁獲量 2,400 kg
kg当 単価 300 원

② 1975年 一般物価指数 100 基準
1976年 118.5
1977年 136.8
1978年 162.5 라 할 때

1976年 価格의 1978年 現在価値는

$$200\text{ 원} \times \frac{162.5}{118.5} \fallingdotseq 274.3\text{ 원}$$

1977年 価格의 1978年 現在価値는

$$220\text{ 원} \times \frac{162.5}{136.8} \fallingdotseq 261.3\text{ 원}$$

이므로 1976年 漁獲金額을 1978年 現在価値로 換算한 金額은,

2,000 kg × 274.3 원 = 548,600 원

1977年 漁獲金額을 1978年 現在価値로 換算한 金額은 2,500 kg × 261.3 원 = 653,250 원이고,

1978年末 現在의 漁獲金額은

2,400 kg × 300 원 = 720,000원이다.

따라서 平均年間漁獲量을 処分当時의 時価로 換算한 総金額은

(548,600 + 653,250 + 720,000) ÷ 3 = 640,616.7 원이 된다. [22]

3) 漁業経費의 規定

現行 補償制度에서는 漁業経費를 各種 税金, 販売 手数料 등 7개로 明示하고 있다. 이때 이 経費項目 만을 経費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漁業経営費로 해석하여 위에서 예를 든 7가지 이외의 것도 経費에 包含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対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加害者側은 後者를 取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平年収益額을 적게 計上하여 결과적으로 補償金을 적게 支給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法条項 解釈上의 混雜을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그 개념을 明確하게 定할 必要가 있다.

4) 年 利

年利는 銀行一般貸出利子率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処分当時"라는 時間概念을 挿入하는 것이 더욱 분명한 規定이 될 것이다.

5) 補償水準

水産業法施行令 第 72条 第1項 第1号의 가, 나에서는 年利로 平年水益額을 還元하여 損失額을 구한 후 施設後 収穫이 있는 경우는 그 評価額의 80 %를, 施設後 収穫이 없는 경우는 50 %만을 인정한다고 하고

註 . 22 : 이도 엄격하게 処分当時의 時価로 換算한 金額이 아니고 '78 年末 現在의 時価로 換算한 것이다.

있는데, 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施設後 收穫이 있었던 漁業權이 取消가 되는 경우, 이것은 正常的으로 漁業活動 中이던 것을 消滅케 하는 것이므로 完全補償의 原則에 입각하여 還元価値(評価額)의 전부를 補償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漁業權漁業別 特性을 고려하지 않고, 一律的으로 評価額의 80%만 補償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한편 施設後 收穫이 없는 경우는 굳이 還元法에 의한 損失額算定을 고집한다면, 損失額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還元法 자체가 가지는 短点에 속하는 것이므로 正当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現制度에서 施設後 收穫이 없드라도 還元額의 50%는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施設後 收穫이 있는 경우와 收穫이 없는 경우의 두 경우만으로 分類하여 補償水準을 다르게 定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즉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所有權은 自己의 個人的 労動에 의한 労動의 成果로서의 所有權과 他人의 労動이나 資本을 支配하는 所有權을 구별하여, 前者는 이를 保護하고, 後者는 이를 制限하여야 한다는 思考를 가져야 하는데, 一般的으로 両者를 구별하지 않고 制限할 수 있는 것처럼 論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労動의 成果로서의 生存權的 所有權이 制限되고 資本制的 所有權을 保護한다는 逆의 結果를 容認하는 結果를 초래하기 쉽다.[23] 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補償의 対象으로서의 구체적인 漁業別 一定置漁業, 養殖漁業, 第 1, 2, 3 種 共同漁業一 로 補償水準을 달리 定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生存權的 所有權으로서의 共同漁業權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完全補償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 定置漁業權이나 養殖漁業權에 있어서는 그 行使主体가 漁村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完全補償을 하되 그 損失을 가져오는 原因이 專業上의

註23 : 渡辺洋三, 所有權の 思想, 現代法 13, P. 135 以下

必要에 의한 것과 같이 지극히 중요한 경우에는 補償水準에도 可變性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部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研究가 必要할 것이다.

다. 補償制度에 관련된 기타의 問題点

1) 補償金 交付期間

補償金은 그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2年 以內에 当該 行政官庁이 支給하도록 하고 있는데, 補償金交付時限인 이 2年이 너무 길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漁業權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들은 대부분 零細漁民들이므로 만약의 경우 2年이 되어서야 補償金이 交付된다면, 그들의 資金事情으로 미루어 보아 막대한 타격을 받게된 것이다.

물론 漁業權 損失을 가져와도 다른 漁場에서 操業할 수 있어 그 期間을 길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國家가 土地를 收用하여 土地所有者에게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할 경우 事前補償原則을 取하고 있으며, 埋立工事 등에 의해 漁業權損失을 가져올 때도 工事実施 이전에 協議하여 補償이 된 후 工事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公益上必要와 遡河魚類 등의 保護를 위해 漁業權損失을 가져올 경우도 補償金의 交付期間은 大幅 단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埋立에 의한 漁業權損失의 問題

가) 補償金 決定方法

埋立工事 등을 위해서 漁業者가 漁業權을 抛棄한 경우, 加害者와 漁業者가 協議하여 補償金을 決定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双方間의 利害対立으로 말미암아 円滑한 協議成立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社会的, 経済的인 地位가 상대적으로 劣悪한 損失漁民에게 불리하게 補償金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行為에 대해 損失漁民들의 正当한 権益을 보장하기 위하여 土地収用委員会와 一般訴訟制度와 같은 制度的 装置가 있기는 하나 그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뿐만 아니라 決定時期가 지연됨으로써 損失漁民에게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다. 이러한 問題는 適正水準의 補償金을 算定하기 위한 規定을 두지 않음으로써 비롯되는 것으로, 이때도 水産業法 및 同施行令에서 補償金 算定을 위한 算式을 두고 그 槪念을 定하는 것과 같은 規定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協議成立前 埋立工事의 強行

埋立者의 이해부족 또는 횡포로 損失漁民들과의 協議가 成立되기 전에 埋立工事를 強行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킨 事例도 많았다. 現行 制度上 埋立者는 補償後나 이에 갈음하는 施設을 한 후가 아니면 工事에 착수할 수 없는데 協議成立 前에 埋立工事를 強行한다는 것은 명백한 違法行為이다. 따라서 이러한 行為로 인하여 善意의 漁業者가 입는 被害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発生하였을 때는 埋立免許權을 取消케 하는 등의 処罰規定이 있어야 할 것이며, 補償과 더불어 賠償의 責任까지 지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漁業權損失処分의 効力発生時期

現行 制度에서는 当該 行政官庁이 漁業權의 取消, 漁業의 制限 등과 같은 漁業權損失을 가져오게 함에 있어서 그 漁業에 관련된 諸事項을 公告하고 그 사실을 漁業者에게 通知하면 漁業者는 이를 登録하여야 한다고만 하고있고 漁業權損失의 処分을 通知한 후 一定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規定은 없다.

일종의 財産權인 漁業權에 損失을 가져오는 処分을 할 때는 그 사실을 通知한 후 一定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漁民들로서는 물론 그에 상당하는 補償을 받기는 하나 漁業權의 取消를 당하는 경우에는 生活基盤을 잃게 된다. 더구나 즉시 다른 漁業이나 다른 職業으로 転換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다른 生計手段을 찾는 準備期間으로서 一定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漁業權取得後 施設物設置를 하지 않은 경우

漁業權을 取得하고서 施設物을 設置하지 아니하였을 때, 漁業權損失을 당하면 漁業權의 取得価額을 補償金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漁業者 자신의 사정으로 施設物設置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限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漁業者가 施設物設置를 하려고 했으나 行政官庁에서 그 漁業權을 곧 取消하려고 하니 施設物設置를 하지 말라고 慫慂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事例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施設物을 設置하지 않고 休業할 수 있는 最大時限인 1年內에서 慫慂後의 残余期間에 대한 追加補償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行政官庁의 慫慂日 現在 漁業者가 어떤 이유로 施設物을 設置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큰 問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漁業者가 施設物을 設置하고자 할 때 그를 위한 承認制度를 둔다. 그리하여 行政官庁이 그 漁業權을 取消하거나, 漁業을 制限할 필요가 있으면 施設物設置의 承認을 하지 않고, 그날로부터 起算하여 漁業權取得価額에다 漁業權取得後 1年間의 残余期間에 대한 補償을 追加로 하여준다. 한편 漁業者가 施設物設置申請後 고의로 工事着手를 지연하여 행여나 이 追加補償金을 取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施設物設置承認後 조속한 時日 內에 工事에 착수하게 할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以上으로 살펴본 追加補償을 決定하는 追加補償率(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残余日數를 x, 銀行一般貸出利子率은 i이라고 하면 $r = \frac{ix}{365}$ 가 된다.

그리하여 漁業權取得後 施設物設置를 위한 申請을 하였다가 行政官庁의 慫慂에 의해 施設物設置를 하지 않고 있던 中 그 漁業權에 損失을 가져왔을 때의 補償金算定은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구할 수 있다. 즉 補償金을 Y, 漁業權取得価額을 K, 追加補償率을 P라고 하면 $Y = K(1 + r)$ 가 된다.

參考文獻 및 資料

1. 沿岸漁場 利用実態評価 教授団, 「沿岸漁場 利用実態研究」, 1977.12.
2. 釜山水産大学, 「釜山水産大学 論文集」, 第13輯, 第15輯.
3. 金元鉄, 「經營学原論」, 經文社, 1978.
4. 尹世昌, 「行政法(上)」, 博英社, 1976.
5. 法務部 法律諮問委員會, 「論説集」, 第1, 2輯. .
6. 海事行政特別審議委員會, 「現行漁業権 補償制度改善을 為한 補償事例 및 問題点 検討報告」, 1967.11.
7. 金庚烈, 「土地公法」, 建設研究社, 1977.
8. 金永鎭, 「不動産評価論」, 建設研究社, 1976.
9. 李輔活, 「鑑定評価法令」, 考試院, 1976.
10. 趙益淳, 「現代會計学」, 博英社, 1976.
11.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74.
12. 済州大学, 「済州大学論文集」, 人文社會科学編, 1978.
13. 岡本清造, 「水産經済学」, 恒星社 厚生閣, 1970.
14. 水協中央會, 「漁村契実態調査報告」, 1977.
15.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77.

〈附 錄〉

損失補償異議申請檢討

慶北養殖漁業權 : 1,060 (15 ha → 300대)

区 分	請 求	道査定	76. 3.15調査委員會決定		異議申請	検 討 内 容	
			決 定	事 由		検 討	事 由
損害額	원 17,425,202	원 4,076,903	원 4,076,903		異議申請額 : 47,863,181 원	12,987,700 (8,910,797)	1) 当初漁業権取消處分 (75. 10.31) 補償時 養殖方法은 延統垂上式에 依한 関係資料를 申請하였으나 異議申請에는 四角延繩式에 依한 施設費 및 經營費를 算出申請하여 異議申請이 一貫性이 없으며 經營費算出에 있어 證憑할 수 있는 資料가 없으므로 既中央水産調整委員會에서 次定한 慶北道 査定資料를 根基로 検討調整

区 分	請 求	道定額	76. 3.15 調整委員會決定		異議申請	検 討 内 容	
			決 定	事 由		検 討	事 由
							2) 漁業經營費中 二重減価償却된 漁具備를 除外하고 乾燥人件費를 除外함.
收入額	kg 165,000 원 (5,200,000)	kg 120,000 원 (3,600,000)	kg 120,000 원 (3,600,000)	慶北道査定額을 反映 補償対象者會議時 合意調整된 生産量 m当 4 kg kg当 価格 30원을 適用	○ 異議申請額 : 8,550,000 원 (30,000 m × 5 kg × 5.7 원) ○ 75. 9. 9 隣近月城即 漁業権補償時 適用한 5 kg을 適用 또는 75 慶北農持專業基準量을 適用하여 줄것	원 3,600,000	1) m当 生産量과 kg当 単価는 76. 3. 9 迎日郡의 補償対象者 會議時 4 kg와 30 원으로 合議調整한바 있으며 m当 5 kg kg当 57 원으로 認定한 境遇 既補償者에 対한 衡平을 기할 수 없으므로 認定키 難함. 2) 75 年 浦項水協管内 年間 平均 미역 委託販売実績(水協発行)이 29.93원

					ㅇ kg当 単価는 道内去来時 勢 57원을 適用 하여 줄것		임으로 当初 決定額 30 원으로 確定코저 함.
支 出 額	2,056,366원	557,400원	557,400원				
(漁業經費)							
1.漁 具 費	1,289,590	2,062,800	2,062,800	慶北道査定額	1. 漁具費 :	650,000원	1) 施設費 鑑定時 減価償却
ㅇ漁具減価償却	719,590			을 反映	420,667 원		된 漁具類 (親縄, 間縄,
ㅇ漁具補修 및 購入	570,000				漁具補修 및 購入		縄, 支縄, 浮子) 에 対하여
					費 : 60,667 원		는 經營費 算出時 減価償
ㅇ親 縄		130,000	130,000				却에서 除外함이 妥当하며
ㅇ間 縄		360,000	360,000				施設費에 反映되지 않은
ㅇ支 縄		163,800	163,800				닻 (앙카) 雑縄에 対하여도
ㅇ浮 子		364,000	364,000				減価償却対象에서 除外함이
ㅇ앙 카		129,000	129,000				妥当함
ㅇ닻 줄		180,000	180,000				

区 分	請 求	道査定	76. 3. 15 調整委員會決定		異議申請	検 討 内 容	
			決 定	事 由		検 討	事 由
○雜 繩		86,000원	86,000원				
○種 糸 代		650,000	650,000		種糸代 : 360,000 원 (30,000 m × 1.2 倍 × 10 원) ○施設費鑑定時 處理된 減価 償却費를 經 營費에서 二 重計算하였음	650,000	2) 異議申請人 提示한 当 年 消費材인 種糸代의 単 価는 自体生産原価 10 원을 適用 360,000 원을 算出하였으나 当初決定한 3 年 平均 種糸代 650, 000 원 (m当 21.67원) 을 適用함이 妥当
2. 漁 船 油 類 費	35,800원	35,800	35,800	慶北道査定額을 反映	2. 漁船油類費 : 186,333 원	35,800원	1) 異議申請漁船油類費는 傭船이므로 漁船補修 및
○漁船減価 償 却 費	20,000	20,000	20,000		○機械修理費 : 7,333 원	20,000	機械修理費等 一貫性이 없어 適用키 難함
○修 理 및 手 入 費	8,400	8,400	8,400		○傭船料 : 126,667	8,400	2) 漁船油類費는 当初 決 定額을 適用
○船 具 費	7,400	7,400	7,400				

					○ 油類費 : 37,333 원 ○ 漁船補修費 : 15,000	7,400	
3. 人 夫 賃 ○ 漁 場 管 理 費 ○ 採 取 및 人 夫 賃 ○ 乾 燥 人 夫 賃	594,333원 78,000 353,000 163,333	753,000원 98,000 410,000 245,000	753,000원 98,000 410,000 245,000	慶北道査定額을 適用	3. 人夫賃 : 579,167 원 ○ 漁場管理費 : 250,000 원 ○ 採取 및 人件費 : 250,000 원 ○ 乾燥人夫賃 : 79,167 원	439,330 원 98,000 341,330	1) 漁場管理費는 慶北道査定額으로 根基함 2) 慶北道의 人件費査定額은 3 個年間 1 人 日当 1,000 원으로 同一하게 適用하였으나 年度別 政府労賃単価 (73 : 600 원, 74 : 820 원 75 : 1,030 원) 를適用算出함이 妥当할 것임

区　分	請　求	道査定	76. 3. 15 調整委員會決定		異議申請	検　討　内　容	
			決　定	事　由		検　討	事　由
							3) 經營費中　收入에 있어서 生미역을　基準하였으므로 乾燥人夫賃은　除外함이 妥当함
4.販　売 手手料		75,000 원	75,000원	慶北道査定額 適用		75,000 원	1) 異設申請人은　萎販実績이　없어　販売手数料를 計上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養殖場　運營에　있어서는　萎販에　따른　販売手数料를　負担　適用함이　妥当함
5.제세공과	2,000 원	2,000	2,000	慶北道査定額 適用	제세공과 : 2,000 원	2,000	地方税의　免許税
6.漁　網 管理費	114,000	114,000	114,000	慶北道査定額 適用	漁網管理費 : 100,000 원	114,000	1) 異設申請에　따른　関係證憑資料가　없으므로　当

							初 決定額을 適用
施 設 費	1,2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慶北道査定額適用(浦項水協鑑定価適用함)	施設費 : 10,382,753원 ○政府農持事業標準設計에 의하여 卓上鑑定하였으므로 現場実際鑑定에 依한 施設費를 適用할것 ○施設費를 74年 基準으로 算出適用하였으므로 75年 處分年度 基準으로 適用하여 줄 것	1,200,000	1) 慶北道調査資料에 依하면 異設申請人이 提示한 部分中 넘에 対하여는 部分的으로 確認된 바 있으나 実際 所要量을 確認할 수 없음으로 水産業法施行令 第72条3項에 依拠 施設費라 함은 基準年度의 銀行評価額에 依한대로 規定되여 鑑定院의 遡及鑑定이 不可能한 現時点에서 当初 浦項水協鑑定価를 適用할 수 밖에 없으며 2) 異議申請한 四角延縄式

区 分	請 求	道査定	76. 3.15 調整委員會決定		異議申請	検 討 内 容	
			決 定	事 由		検 討	事 由
							養殖方法에 依한 施設内訳을 基準하여도 施設費는 5,836,210 원이 算出되므로 妥当性이 희박함
	※ 損失補償金 = (収入額 - 漁業經費) ÷ 年利 × 0.8 + 施設費 = (3,600,000-1,316,130) ÷ 0.155 × 0.8 + 1,200,000 = 2,283,870 ÷ 0.155 × 0.8 + 1,200,000 = 12,987,700 원						水産業法施行令 (再法) 第 72 条 (損害額의 算出) 1 項 1 号가 養殖漁業 (1)施設後 3 年 以上의 収穫이 있는 경우 最近 3 年間의 平年収益額 - 年利 × 0.8 ×養殖施設費